

FTA 활용

농수산물 수출핸드북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CONTENTS

CHAPTER 1 FTA의 정의 및 내용

CASE 01. FTA란?	6
CASE 02. FTA법령 및 구성	8
CASE 03.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10
CASE 04. 주요국 FTA 농수산물야 양허내용	12

CHAPTER 2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CASE 01. 1단계 : 수출 대상국의 발효국 여부 확인	18
CASE 02. 2단계 : 품목번호(HS CODE) 확인	19
CASE 03. 3단계 : FTA 관세 혜택 확인	21
CASE 04. 4단계 :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22
CASE 05. 5단계 : 원산지 증명서 발급	29
CASE 06. 6단계 : 수출 및 관련 서류 보관	32

CHAPTER 3 원산지 결정기준

CASE 01.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하기	36
CASE 02. 농수산물품 실무예시 및 설명	64

CHAPTER 4 인증수출자제도

CASE 01. 인증수출자제도 개요	74
CASE 02. 농수산물 인증절차와 구비서류	76

CHAPTER 5 사후 관리 및 검증

CASE 01. 사후관리	92
CASE 02. 검증	95

CHAPTER 6 FTA활용지원제도

CASE 01. aT지원사업안내	100
CASE 02. 기타기관지원제도	120

CHAPTER 7 부록

CASE 01. 유용한 홈페이지	140
CASE 02. 주요기관 연락처	142
CASE 03. FTA체결 주요국별 농수산식품 수출영향	143
CASE 04.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및 확대방안	155

An Export Handbook in Applying FTA



01

CHAPTER

FTA의 정의 및 내용

CASE 01. FTA란?

CASE 02. FTA법령 및 구성

CASE 03.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CASE 04. 주요국 FTA 농수산물야 양허내용

FTA란?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01 자유무역협정이란? (FTA: Free Trade Agreement)

- 협정을 맺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상호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特惠무역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

02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형태

- ①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 간 상품 교역 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예: NAFTA)
-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비회원국에 대해 공동 관세제도 등을 적용하는 협정(예: MERCOSUR)
-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에서 추가하여 회원국 간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협정(예: EEC)
- ④ 단일시장(Single Market): 완벽한 경제통합의 상태로 회원국 간 단일 통화, 공동 의회를 설립하는 협정(예: EU)





03 FTA의 경제적 효과

무역효과

- 관세인하로 체결국간 신규무역 창출
- 관세인하로 수입 거래선 전환 (非체결국 → FTA체결국)
- 역내 기업들이 기존 생산 설비를 재배치

시장효과

- 무역장벽 해소로 시장확대 등 규모의 경제 발생
- 역내 타 국가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로 경쟁심화
- 역내 시장 진입을 위해 제3국 기업의 투자 증가

FTA법령 및 구성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01 FTA협정문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성

FTA 협정문 체계는 대체로 비슷하며 전문(Preamble), 협정 본문(장, 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서한(Letter) 등으로 구성

협정 구성 요소별 주요 내용 (예시 : 한 · 미 FTA)

구성 요소	주요 내용
전문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
본문(장)	분야별로 Chapter를 분류하여, 양측의 합의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
부속서	분량이 방대(양허안 등)하거나, 특정 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
부록	부속서 중에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규정
서한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해석 내용 또는 협상 과정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

2 협정문 내용

합의 내용 본문은 크게 상품 분야, 무역 규범 관련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

협정 본문 주요 내용 (예시 : 한 · EU FTA)

	chapter 명칭		chapter 명칭
제1장	목표 및 일반 정의	제9장	정부조달
제2장	내국민 대우 및 상품 분야 시장 접근	제10장	지식재산권
제3장	무역구제	제11장	경쟁 정책
제4장	기술장벽(TBT)	제12장	투명성
제5장	위생검역(SPS)	제13장	교역 및 지속 발전
제6장	통관 원활화	제14장	분쟁 해결 절차
제7장	서비스 교역, 설립 및 전자 무역	제15장	최종 규정
제8장	지불 및 자본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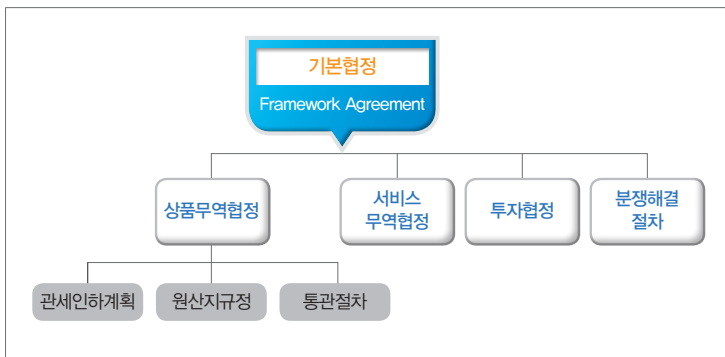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국 · 영문) 열람 가능한 곳은?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
-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http://fta.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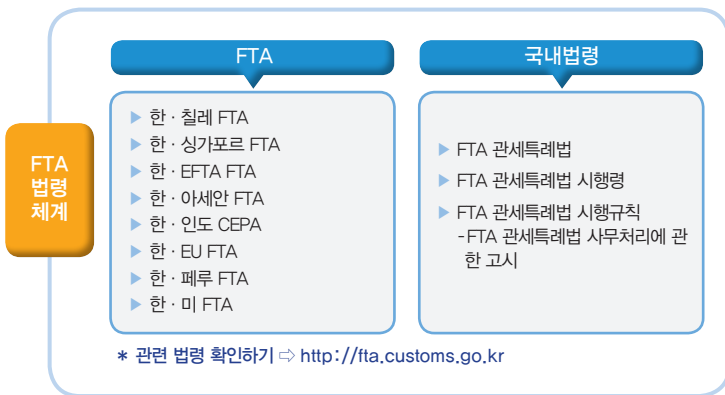


02 FTA 법령체계

■ 협정의 기본체계



■ 협정과 국내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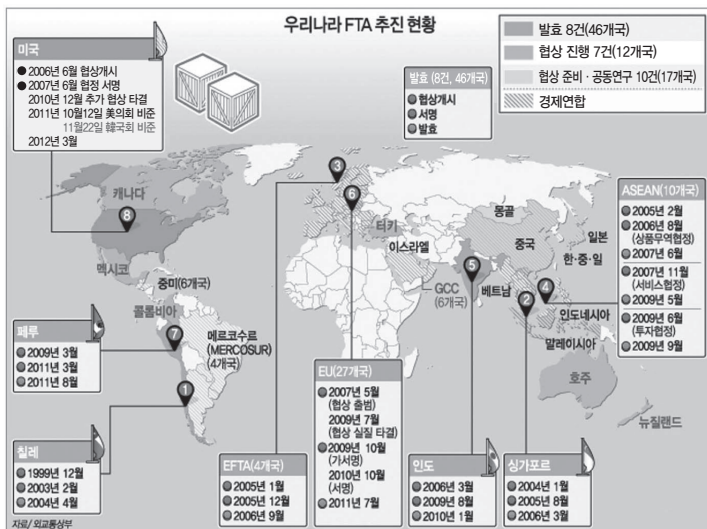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01 FTA 추진현황

- 칠레·EFTA·아세안·EU 등 8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터키와 가서명 및 협상타결 (12. 3. 26)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연합체

EU(유럽연합)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 키프로스,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27개국

FTA교역비중 : 한-미 FTA 발효이후 약 35%까지 증가 전망
(세계경제의 61%가 우리 경제 영토로 편입)



02 FTA 체결 절차

1 여건 조성 단계

양측 통상 담당 기관 간 의견을 교환하거나, 민간 기관 간 또는 정부 간 FTA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공동 연구, 공청회 개최

2 협상 진행 단계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기간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2년 내외

3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서로 협정문을 작성하면 양측 수석대표(보통 국장급)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이때 실질적인 협상이 타결)

4 정식 서명

협상 타결 후 내부 보고 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 후 정식으로 서명

5 국회 비준 및 발효

정식 서명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 후 동의를 받아야 함.

국내 절차 완료 후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체결국 간 통보 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



TIP 관련 법 규정이 많을 경우 어느 법부터 적용될까?

- 국내법이 협정과 상충하면 협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 협정의 영문과 국문이 상충하면 영문을 우선 적용한다.
- FTA 관세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을 준용한다.

주요국 FTA 농수산물분야 양허내용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01 한·미 FTA

- 농산물 : 품목수 기준 58.7%(대미 수출액 기준 82.0%) 관세 즉시 철폐
 - 즉시 관세철폐 품목 :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계탕, 김치 등
 - * 아이스크림, 버섯 등 기타 품목(22.7%)은 대부분 5년 이내 관세 철폐
- 수산물 : 우리측 민감 수산물(민어, 고등어, 넙치류, 명태 등)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도입 등
 - 대부분의 참미 수출 수산물은 관세가 없거나 즉시철폐 적용

대미 수출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단위 : %, 백만불)

양허유형	품목수	비 중	대미수출액 (03-05 평균)	비 중	품 목
즉시	1,065	58.7	184.33	82.0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삼계탕, 포도주스(신선), 오렌지주스(병동)
2년	10	0.6	0.20	0.1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5년	401	22.1	4.56	2.0	아이스크림, 버섯
6년	1	0.1	-	0.0	호두(탈각)
7년	91	5.0	30.92	13.8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저장)
10년	154	8.5	4.33	1.9	설탕, 차
15년	65	3.6	0.03	0.0	맵쌀, 쇠고기, 치즈
10년 철폐, 수입쿼타	26	1.4	0.32	0.1	낙농품(300톤)
총계	1,813	100	224.70	100	

02 한·EU FTA

- 농산물 : 품목수 기준 91.8%(대EU 수출액 기준 88.3%) 관세 즉시 철폐
 -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켓(복합세) 등
 - 일부 채소 및 과일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 시장진입가격제도 :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

■ 수산물 : 품목수 기준 72.6%(대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 즉시철폐 또는 3년 내 철폐하고 모든 수산물이 5년내 완전 개방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 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꽃꾸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

대EU 수출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대EU 수출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
즉시	1,896	91.8	45,333	88.3	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녹차, 화훼류, 비스킷, 음료, 간장 등
3년	10	0.5	443	0.9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 등
5년	119	5.8	5,309	10.3	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 덱스트린, 오렌지, 감귤 등
양허제외	39	1.9	249	0.5	쌀
합계	2,064	100.0	51,333	10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03 한·ASEAN FTA

■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일반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나뉨

- 일반품목군의 경우 선발가맹국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12년 완전철폐

- 후발가맹국 베트남 '18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관세철폐 완료 예정

■ ASEAN 6개국의 경우 품목수 90%이상, 수입액 90%이상 완전 철폐



아세안 주요국별 한국 주요농수산물품 양허 결과

국가	품목	'11 수출실적 (천불)	기준관세율	연도별 관세율		
				2010	2011	2012
태 국	황다랑어(030342)	22,036	5	0	0	0
	커피엑스(TRQ 210111)	4,753	40	26.67	22.22	17.78
	대구(030352)	3,434	5	0	0	0
	고등어(030374)	3,009	5	양허제외		
	라면(190230)	1,939	30 또는 10baht/kg	0	0	0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190590)	1,305	30또는 25baht/kg	0	0	0
	딸기(신선)081010	1,210	40 또는 33.5baht/Kg	0	0	0
베 트 남	어류(기타)030379	12,069	30	20	15	15
	조제분유(190110)	7,453	30	20	15	15
	오징어(냉동)030749	6,883	30	20	15	15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19059010)	5,115	50	25	20	20
	팽이버섯(신선)(070959)	4,907	20	15	10	10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210690)	1,928	20	15	10	10
인 도 네 시 아	대두박(230400)	2,805	0	0	0	0
	라면 (190230)	2,335	5	0	0	0
	옥수수전분 (110812)	2,130	10	0	0	0
	아이스크림 (210500)	952	5	0	0	0
	배(신선) (080820)	800	5	0	0	0
	음료 (22029090)	716	10	5	5	0
	게 (030614)	633	5	0	0	0
말 레이 시아	옥수수전분 (110812)	10,715	—	0	0	0
	커피엑스 (210111)	3,945	—	0	0	0
	라면 (190230)	3,334	—	0	0	0
	대두박 (230400)	2,966	—	0	0	0
	굴(건조) 030710	2,088	—	0	0	0
	딸기(신선) 081010	1,645	—	0	0	0

※자료원: KATI, 무역협회(관세율), 2011 hs code 기준

* 상호대응세율제도에 따라 일부품목(민감)의 경우 세율이 달라질수 있음



An Export Handbook in Applying FTA



02

CHAPTER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CASE 01. 1단계 : 수출 대상국의 발효국 여부 확인

CASE 02. 2단계 : 품목번호(HS CODE) 확인

CASE 03. 3단계 : FTA 관세 혜택 확인

CASE 04. 4단계 :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CASE 05. 5단계 : 원산지 증명서 발급

CASE 06. 6단계 : 수출 및 관련 서류 보관

1단계 :

수출 대상국의 발효국 여부 확인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01 FTA가 타결되었더라도 정식으로 발효되어야 FTA 관세를 적용가능

- 한·타키 FTA의 경우 12. 3. 26 가서명 및 협상타결 선언하였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아 FTA관세를 적용이 불가능함

02 수출자가 FTA체결국에 소재해야 FTA 관세를 적용 가능

- FTA에서 규정하는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人, 자연인·법인)을 말함
-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자료 보관 의무가 있고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되므로 제3국에 소재하는 인(人)은 수출자가 될 수 없음



TIP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품목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품목과 원산지 증명을 각각 다른 FTA절차로 하는것은 금지



수출 계약 시 주의할 점

-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가 요구 시
 - 원산지 결정 기준 등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 원산지 증명서 조항을 계약서 등에 명시
- 부정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로 확인된 경우
 - 수입자 추징(벌금) 등 불이익

2단계 : 품목번호(HS CODE) 확인

CASE

02

| 사후관리 및 검증 | FTA활용지원제도 | 부록 |

An Export Handbook in Applying FTA

01 정확한 품목 번호 확인은 관세율을 줄이는 지름길

- 품목 번호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결정
-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역시 품목 번호별로 규정되므로 정확한 품목 번호 확인은 필수
 - 국제적인 상품 분류 체계인 HS코드는 관세율과 직결됨
 - 국가별로 코드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짐

02 품목 번호란?

- 세계관세기구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협약에서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
-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하나 7단위 이하는 국가별로 세분하여 각기 달리 사용
-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화하고 있고 미국은 10단위,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기본으로 함



품목 분류에서 2단위는 '류', 4단위는 '호', 6단위는 '소호'
예를 들어 현미의 HS CODE 6단위는 1006.20

10
류

06
호

20
소호

▶ 이렇게 구분하며 국제적으로 공통 사용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메현미는 1006.20.1000으로,
찰현미는 1006.20.2000으로 구분

03 품목 번호 확인 방법?

- 품목 번호는 수출 상대국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
- 수출 업체는 6단위 이하까지 전체 번호를 알아야 상대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음

① 1단계 : 6단위까지 확인

- 6단위는 전 세계 공통이므로 6단위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 확인 방법

- 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http://www.customs.go.kr>
- ② 관세청 고객센터 문의 가능 전화 : 1577-8577 해외 : 82-2-3438-5199
- ③ 관세청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서울세관 10층 고객센터



② 2단계 : 6단위 이하 확인

- 수출 상대국 관세율을 6단위 이하로 세분하여 정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관세혜택 여부 확인이 가능
- 확인 방법

- 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http://www.customs.go.kr>
- ②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http://db.kita.net>
- ③ KOTRA 관세율 표 FAX 서비스 <http://www.kotra.or.kr>



3단계 : FTA 관세 혜택 확인

CASE

03

| 사후관리 및 검증 | FTA활용지원제도 | 부록 |

An Export Handbook in Applying FTA

01 수출 물품이 협정 적용 품목인지 확인

- 생산 품목을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하고자 할 때
-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세 혜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한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일반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유리
- 협정세율과 실행세율의 차이가 없다면 관세 혜택이 없는 일반 수출과 동일하므로 결정 기준 확인 등의 절차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음

02 FTA 관세 혜택 계산 방법

FTA 협정을 적용받지 않을 때 적용되는 일반세율과 FTA 협정세율의 차이 만큼 관세 혜택이 발생함

$$\text{관세 혜택} = (\text{일반세율} - \text{FTA 협정세율}) \times \text{상대국의 과세 가격}$$

03 FTA 혜택 정보 검색 방법

- 일반세율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팩스, 상대국 세관에 질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
- FTA 협정세율 : 관세청 FTA 포털, 한국무역협회 FTA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
- 해당 사이트에서 FTA 발효 중인 국가의 MFN 세율도 제공하고 있음

* MFN 세율 : FTA 미체결국에 적용하는 관세율

4단계 :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01 원산지 결정 기준이 필요한 이유

-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부여
-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

02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 원산지 결정 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기준과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 규정인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
-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같이 적용

구분		종류
일반기준	기본 원칙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 원칙 ■ 총분가공 원칙 ■ 누적기준 ■ 직접 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 최소기준 ■ 중간재 ■ 대체 가능 물품 ■ 간접 재료 ■ 세트 물품 ■ 부속품 · 예비 부품 · 공구 ■ 포장 · 용기
품목별 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가공공정기준 ■ 조합기준 ■ 선택기준

03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판단 방법

1 재료 명세서(BOM)로 재료 내역 확인

- 재료 명세서, 부품 리스트 등의 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원재료 가격이 나와 있으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데 유용함

2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구입 경로 확인

- BOM 등에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 경로, HS코드 및 원산지 항목을 추가
- 구입 경로 확인 시 원산지 결정 용이
- 국내 구매, 해외 구매 여부 확인
- 수출자가 직접 구매 또는 생산한 것인지, 납품 업체가 생산, 구매(수입) 납품한 것인지 여부 확인
- HS코드 : 세번 변경 여부 및 재료의 원산지 확인에 필수 기초 자료
- 구입 경로별로 자체 확인 건과 납품 업체 확인 의뢰(원산지 확인서 요청)건



을 분리하여 확인

3 부품별 HS코드 확인 후 원산지 결정

- 확인 절차 : 수출자 직접 수입 부품 > 외부 공급자 수입 물품 > 자가 생산부품 > 외부인 생산 납품 물품 순으로 쉬운 것에서 시작하여 어려운 것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결정
- 국내 구매 부품을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납품 업체로부터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제출 받기

4 최종 생산 제품의 원산지 결정

04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작성하기

1 원산지 확인서

-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재료(부품)를 공급하는자가 공급받는자의 요청에 의거,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정하여 작성하는 서류



▶ 관련근거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및 별지 제4호 서식

2 원산지 포괄 확인서

-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사용 가능 (한 · 미 FTA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서식 제⑩번란에 최초로 공급한 일자와 포괄기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 (포괄)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1.공급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주소(전자주소)	
2.공급처 (수출자 /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주소(전자주소)	

공급물품명세서

3.연번	4.품명 · 규격	5.적용대상 협정	6.품목번호 (HS 6단위)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	[]		
					[]	[]		
					[]	[]		
					[]	[]		
					[]	[]		
					[]	[]		
					[]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작성 · 제출합니다.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직 위:

상호및주소:

작 성 일 자 :



(뒤쪽)

작성 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 급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대표자 성명,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적습니다.															
2	공 급 처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연 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품명 · 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5	적용대상 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6	품목번호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 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결합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 또는 CTSH)+ BD(BU,MC 또는 NC)	바.주요공정기준	- SP	사.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 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결합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 또는 CTSH)+ BD(BU,MC 또는 NC)														
		바.주요공정기준	- SP														
사.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표시합니다.															
9	원산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0.12.01(작성일)-2011.11.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01 원산지 결정 기준이 필요한 이유

1 국내제조확인서란?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생산·수출자의 요청시 해당 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용이하게 함

* [한-미 FTA 6.5조 (누적규정)]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앞쪽)

1.발급번호						
2.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3.공급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FAX					
	E-mail					
4.공급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FAX					
	E-mail					
5. 공급물품 명세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6 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주요 생산과정	
6. 비원산지재료명세						
공급물품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6 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비고

7.본인은 다음사항을 확인합니다.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이 확인서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고, 이 확인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 확인서를 제공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물품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확인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작성자 성명	회사명
작성자 성명	직위
(년) (월) (일) -- -- / -- -- / -- --	전화번호: FAX번호:



(뒤 쪽)

작성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발급번호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제조포괄 확인기간	•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3	공 급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주소를 적습니다.
4	공 급 처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주소를 적습니다. • 공급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5	공급물품 명세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및 주요생산공정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6	비원산지 재료명세	•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등을 적습니다.
7	확인내용	• 밑줄 부분에 첨부서류를 포함한 총 매수를 적습니다.
8	작 성 자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회사명, 서명, 직위, 작성일 및 전화번호·팩스 번호를 적습니다.

5단계 : 원산지 증명서 발급

CASE

05

| 사후관리 및 검증 | FTA활용지원제도 | 부록 |

An Export Handbook in Applying FTA

01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

-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다라도 증명서가 없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FTA 체결국에 수출했다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02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식

구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페루*	EU	한·인도
증명 방식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기관+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발급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 관리원	수출자	세관, 상공 회의소	세관 · 상공회의소 +수출자	수출자	세관, 상공 회의소
서식	양국 간 자율 증명 서식	양국 간 통일증명 서식	국가별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 방식	통일 증명 서식	통일증명서식 또는 송품장 신고방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 증명 서식
유효기간	4년	2년	1년	1년	6개월	1년	1년	1년
사용 언어	영어, 한글 (요구시 번역본 제출)	영어 사용 원칙						
분할 수입	가능	가능						
사용 회수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1회 사용 원칙						

※ 한·EU FTA는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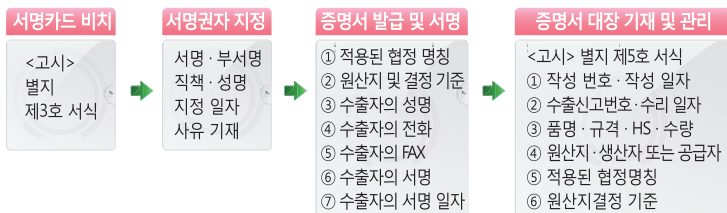
※ 한-페루 FTA는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 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 발급 가능

※ 한-인도 CEPA는 발효 5년후 자율 증명 방식 도입 여부 협의 결정

03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 자율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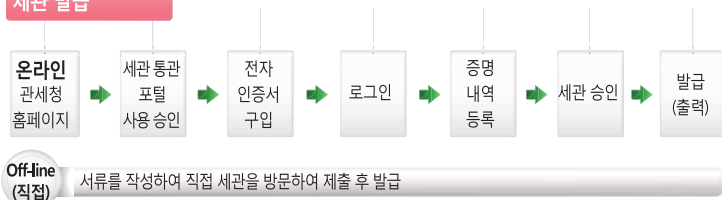
- 1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서명 카드'를 비치하고 서명권자를 지정 · 관리
- 2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 서명
- 3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 · 관리



■ 기관 발급

- 1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서명 카드'를 비치하고 서명권자를 지정 · 관리
- 2 발급 신청 자료를 구비하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발급 신청
- 3 원산지 증명서 정정, 재발급 방법 등 유의 사항 숙지
- 4 온라인(관세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직접 방문) 발급 가능

세관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Off-line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원산지증빙서류와 이해관계자

서류	원재료 생산자/공급자	생산자/공급자 (생산자≠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계약상대국 수입자
국내제조 확인서	작성 → 제출				
	작성 → 제출				
원산지확인서		작성 → 제출			
원산지소명서		(작성) → 제출			
			(작성) → 제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제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심사 발급		
				→ 제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 제출		

6단계 : 수출 및 관련 서류 보관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01 수출 시 운송 요건

- 원산지 증명서가 있더라도 수출 당사국을 출발하여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되어 야만 FTA 관세 혜택이 가능(중간에 제3국을 거치지 않고)
 - 제3국을 거칠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물품과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
 - 제3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 조건하에서 특혜를 주는 예외 인정
-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 수출 시 반드시 한국에서 선적하여 B/L 등 운송 서류상의 선적지가 한국으로 기재되도록 함

02 수출 후 반드시 관련 서류 보관

-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이 원칙
 - 이를 위하여 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있으며
 -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처분

①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원산지 증명서)

- 체결 계약 당사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사본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 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 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 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②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통보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 수출자 또는 체결 계약 당사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 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 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B/L(Bill of Lading:선하증권 船荷證券) :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선(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An Export Handbook in Applying FTA



03

CHAPTER

원산지 결정기준

CASE 01.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하기

CASE 02. 농수산물품 실무예시 및 설명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하기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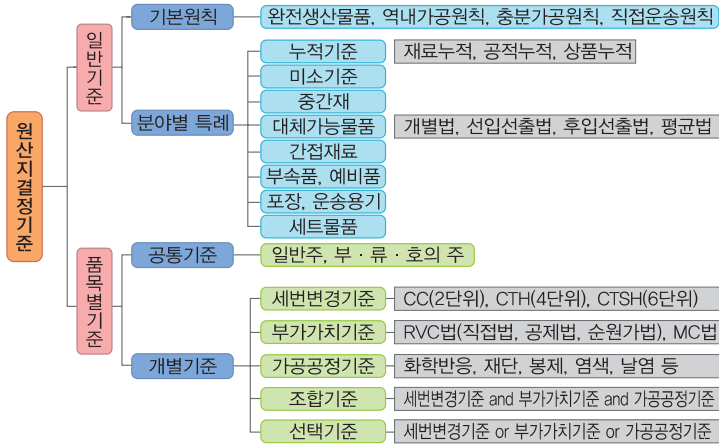
01 원산지의 정의

- 일반적으로 동식물의 본디의 산지(產地) 또는 원료나 제품이 처음 생산된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국적을 취득하듯이 상품도 원산지(Country of Origin)라는 나름의 국적이 존재
- 여러 국가의 재료를 조달하거나 생산 공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임
- 세관 절차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관세법상의 내국물품 · 외국물품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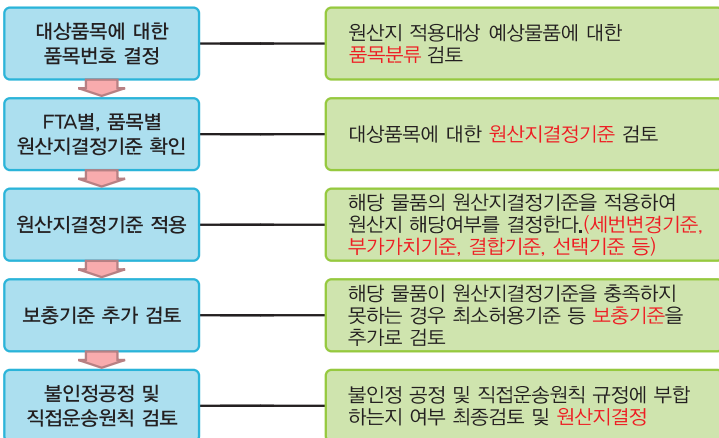
02 원산지 결정기준의 정의

- 원산지결정기준이라 함은 특정물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의미함
- 통상 당해 물품이 어느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함
 - 실질적 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고 이외에 누적기준, 미소기준(최소허용 기준), 불인정공정기준 등 다양한 기준과 역외가공 등 원산지인정에 대한 특례규정도 두고 있음
- 상기 기준들을 충족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이 되며 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에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어 국가별로 다른 기준 적용

03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04 FTA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절차



05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1) 완전생산물품

1 정의

어느 한 국가에서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농수산물, 광업제품 등 1차 산품이 주로 해당.



2 협정별 완전생산물품 정의(주로 농, 수, 축산물의 1차 산품에 해당되는 기준)

FTA 협정	완전생산물품 주요내용
EU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EFTA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된 상품
미국	전적으로 어느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페루	전적으로 어느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인도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아세안	전적으로 수출국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싱가포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칠레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3 협정별 자국선박요건 및 영역의 범위

FTA 협정	자국선박요건	영역의 범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당사국 등록 및 국기계양 요건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칠레와 인도 FTA 협정의 경우 EEZ를 자국의 영역에 포함한다고 명시 EEZ: 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 經濟 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



한-미 FTA 한-인도 FTA 한-페루 FTA	당사국 등록 및 국기계양 요건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 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외측한계 선에 인접하거나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 한 해양지역(EEZ, 대륙붕)
한-EFTA FTA	당사국 국기계양 요건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 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외측한계 선에 인접하거나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 한 해양지역(EEZ, 대륙붕)
한-아세안 FTA	당사국 등록 및 국기계양 요건	-
한-EU FTA	당사국 등록 및 소유요건과 국기계양 요건	-

※ 자국 영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은 선박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 다만,
한-페루FTA에서만 당사국 영역인 경우에도 비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계양한 선박에
의해 획득한 물품은 완전생산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

FTA 협정	주요 내용
칠레/싱가포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안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산 동물
EFTA/아세안/인도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미국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산 동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EU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 당사국 영역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페루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된 상품

⑤ 식물성 생산물

FTA 협정	주요 내용
칠레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생산물
싱가포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취/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생산물
미국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생산물



EFTA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아세안/인도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채집/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상품
EU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페루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채집/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6 영역(영해)밖 바다 획득 물품

FTA 협정	주요 내용
칠레/싱가포르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영해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또는 그 생산품
아세안/인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가를 게양한 선박, 당사국 국가 또는 사람에 의해 공해/영해 밖 바다, 해저 및 하부에서 획득한 어로 생산품
미국/페루	일당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하부 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산물
EFTA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또는 그 밖의 상품
EU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당사자의 선박’과 ‘당사자의 가공선박’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된 것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가 소유되는 회사



7 영역(영해)밖 채취상품

FTA	주요내용
칠레/ 싱가포르	일방 당사국의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채취된 상품
아세안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득된 어로 생산물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된 다른 어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탐사할 권리를 국제법상 가져야 함
인도	당사국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그러한 해저 혹은 해저하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미국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EFTA	당사국이 자국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채취된 상품
EU	당사자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당사자는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페루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취득 또는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해저 또는 해저 하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

8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FTA	주요내용
칠레/싱가포르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아세안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될 것
미국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 영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
EFTA/EU/페루/ 인도	규정없음(완전생산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음)

(2) 역내가공원칙

① 정의

당해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 생산 공정이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본원칙을 말한다.

② 역내가공원칙예외

다음과 같이 각 협정별로 예외적으로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기준을 둬

구분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미국 칠레 EU
허용여부	○		○		○	○	○	×
허용 요건	지역	개성 공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개성 공단	개성 공단	개성 공단	×
	품목	4,625 품목	134 품목	제한 없음	267 품목	아세안 국가별 100품목	108 품목	
	가공비 허용	한국에서 수출조건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근거규정	제4.3조 및 부속서 4B	제4.4조 및 부속서 4C	부속서 I 제13조 및 부록 4 제1조 외	부속서 I 제13조 및 부록 4 제2조 외	부속서 3 제6조 및 양해 각서	제3.14조 및 부속서 3-나	제3.15조 및 부속 서 3-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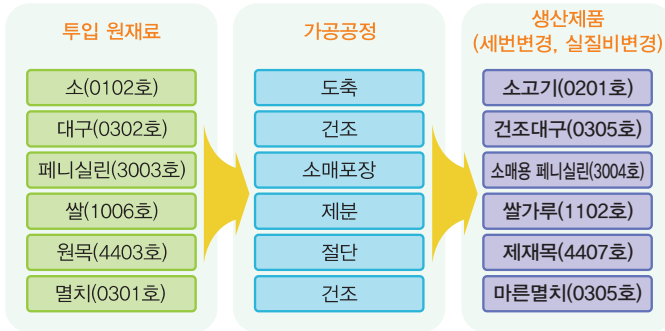
(3) 충분가공원칙

① 정의

- 역내에서 당해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 단순 · 경미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규정에서 정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임.



②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HS(세번)변경 대표적인 사례



- 다만, 타 협정과 달리 한-미 FTA 협정의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도축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를 인정함에 유의

(4) 직접운송원칙

① 정의

당해 물품이 FTA협정을 맺은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계약당사국인 수입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원칙을 의미

② 직접운송원칙 예외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계약국 이외의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함
- 즉, 단순경유라 함은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로 환적, 상품의 보존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는 것을 말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특혜세율을 부여 받지 못하게 됨

■ 직접운송된 경우

-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세관 제출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필요
- 제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어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 제3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06 분야별 특례

(1) 누적기준

① 정의

- FTA협정 체결국 중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 또는 물품이 상대국의 생산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원재료 또는 물품은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함
- 즉, 원산지가 한국산인 원재료 또는 물품이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재료 또는 물품의 원산지를 체약상대국으로 하고,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인 원재료 또는 물품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원재료 또는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② 누적기준 적용사례(한-아세안 FTA)





3 누적기준 유형

재료누적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 (현재 체결된 모든 FTA에 모두 적용)
상품누적	상대국 원산지 상품을 자국 상품으로 간주(특히 세트 구성품이 대표적) (한-칠레, 한-미, 한-페루 FTA에만 적용)
공정누적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한-칠레, 한-미, 한-싱 FTA에만 적용,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하나, 개별 품목별로 인정하는 경우 있음]

협정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미	한-페루
유형	재료, 공정, 상품	재료, 공정	재료	재료, 공정(의류)	재료	재료	재료, 공정, 상품	상품, 재료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일부품목(굴,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은 공정누적 허용

※ 일반적으로 재료누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공정누적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

4 누적기준의 효과



(2)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1 정의

제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또는 중량)이 협정에서 정한 범위 내라면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HS(세번)변경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주로 HS(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는 기준임

2 미소기준 적용사례

제 품: 한국산 고추장(ex-works 2,000원), 수출국: 프랑스(한-EU FTA)
Hs code: 2103.90

BOM(Bill of Materials) 및 원산지판정

품명 (재료명)	세번번호	원재료가격	원산지
A	1701.99	300	한국
B	2009.19	200	한국
C	0904.22	400	미국
D	0904.12	600	한국
E	2103.90	100	중국



$$\frac{100}{2,000} = 5\%$$

4단위 동일
비원산지재료

한국 가공식품 수출업체가 한국산원재료와 중국산 원재료를 조달하여 고추장을 제조한 후 유럽(EU FTA)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단위 변경기준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검토내역:

고추장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중국산 재료 'E'가 동일한 호에 해당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다만, 한-EU FTA규정상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가격기준으로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일부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비원산지 원재료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



③ 협정별 비교

구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미국	EU	페루
일반 품목	8%	10%		10%	10%	10%		10%
가격 기준	농수산물 1류~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1류~14류 적용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제외)	10%	1류~14류 적용제외
중량 기준	섬유	8%	10%	7%	10%	7%	8~30% 일부 가격기준	10%

(3) 중간재

① 정의

최종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계산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자가 직접 자가 생산한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중간재가 원산지결정에서 역내산으로 판정되면 중간재 가격 전체를 원산지 재료의 가치로 계상하는 기준으로 주로 부가가치기준에 적용되는 기준임

② 협정별 비교

구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EFTA	아세안 인도	EU
중간재 인정여부	○	○	○	○	○	×	○
대상물품	자가생산물	자가생산물	자가생산물	역내생산물	역내생산물	×	역내생산물
중간재 지정의무	○	○	×	×	×	×	×

-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에서는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한-아세안 FTA의 경우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음.

3 중간재 적용사례

자가생산재료(중간재)A: 세번변경기준
상품B: 역내부가가치기준(직접법 : 35%)

자가생산재료 A의 생산비용

항목	금액
원산지재료의 가격	1,000원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7,500원
노무비 및 제조경비	1,500원
일반판매관리비	500원
이윤	100원
합계	10,600원

→ 재료 A는 그 재료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었다고 가정

상품 B의 가격

항목	금액
원산지재료의 가격	
- 자가생산된 재료	10,600원
- 기타 재료	3,000원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5,500원
노무비 및 제조경비	6,500원
이윤 및 일반경비	2,500원
국내운송비	100원
합계	28,200원

Roll up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투입하여 생산한 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그 재료비 전체를 원산지 재료비에 계상

Roll down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재료비 전체를 비원산지 재료비에 계상

→ 상품 B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의 48.23% $[(10,600/28,200) \times 100]$ 이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재료 A를 만드는데 소요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상품 B의 원산지 재료가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21.63% $[(3,100+3,000)/28,200 \times 100\%]$ 원산지 상품 불인정

$$10,600 - 7,500 = 3,100$$



(4) 대체가능물품

① 정의

- 곡물, 과일, 베어링, 타이어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함
- 대체가능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 또는 상품이 서로 혼합된 경우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생산자가 이용한 재고관리기법은 일단 선택하게 되면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계속 적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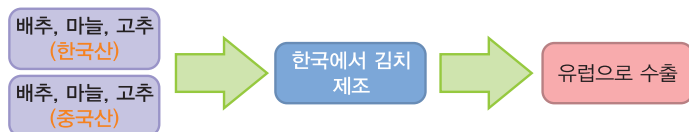
② 재고관리유형

유형	재고관리기법 유형
개별법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 결정.
선입선출법	총 입고 물품 중 먼저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 결정
후입선출법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결정.
평균법	해당 물품의 생산당시 함께 보관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평균 취득단가가 높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 결정.

③ 협정별 대체가능물품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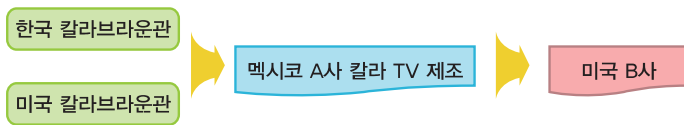
구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아세안	인도	EFTA	EU	페루
적용범위	상품, 재료	상품, 재료	상품,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상품, 재료

4 대체가능물품 적용예시



- 생산자가 이용한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당해 수출되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한국산 또는 중국산으로 결정

5 대체가능물품 원산지 검증사례



- 미국 세관에서 멕시코 칼라 TV회사에게 대체가능물품의 재고관리 기법 적정성 여부 검증
- 멕시코 A사에서 일관된 재고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지 못함
- 미국세관은 미국 B사에 벌금을 징수함(\$ ***,***,***)

※ 재고관리시스템은 서류로 검증 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어야하며, 기록과 일치하도록 재고관리시스템(ERP)이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함.

(5) 간접재료

1 정의

-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은 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
- 협정에 따라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 또는 중립요소(Neutral elements)로 표현하고 있으며, 국내법에서는 간접재료로 규정함
- 제품의 원산지결정시 간접재료는 고려하지 않으나, 한-칠레 FTA에서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원산지재료로 간주함



2 간접재료유형

생산용 재료: 촉매제, 용해제, 연료, 에너지, 공구, 주형, 작업복, 윤활유

시험용 재료: 상품의 시험 및 검사용 설비, 장치, 소모품

설비용 재료: 설비, 건물유지보수용 부품, 재료

생산에 사용된 그 밖의 재료로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

3 협정별 원산지결정시 고려여부

구분	한-칠레	한-싱	한-EFTA	한-아세안	한-미	한-EU	한-인도	한-페루
원산지결정시 고려여부	원산지 재료 간주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6)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

1 정의

하나의 송품장에 의하여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 등이 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수량과 가치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내일 것을 전제로 통상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로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규정. 즉, 부속품 등을 별도로 수입하거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유의해야 함

2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예시

부속품	전자제품 코드, 덮개, 매뉴얼
예비부품	에어컨 먼지 수집기, 예비타이어
공구	차량용 잭, 자전거 도구세트

- 진공청소기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집진봉지는 본 제품인 진공청소기의 원산지를 적용
- 즉, 진공청소기가 원산지제품에 해당할 경우 그 집진봉지가 비록 비원산지 물품일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임

③ 협정별 비교

구분	한-칠레	한-싱	한-EFTA	한-아세안	한-미	한-EU	한-인도	한-페루
세번변경 요건	무시	무시	고려	무시	무시	고려	무시	무시
부가가치 요건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무시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7) 소매용 포장 및 용기와 수송 포장 및 용기

① 정의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신변장식용품 상자과 케이스, 전기면도기 케이스등과 같은 소매용 포장 및 용기와 컨테이너와 같은 운송용 포장 및 용기는 본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시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가 적용됨

② 소매용 포장 및 용기 범위와 예시

-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규정에 따라 포장 및 용기로서의 용도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용물과 같은 HS(세번)에 분류되고, 함께 공급되어야 함

예시	
신변장식용품 상자과 케이스(제7113호)	
전기면도기 케이스(제8510호)	
쌍안경 및 망원경 케이스(제9005호)	
악기의 케이스 및 가방(제9202호)	

③ 협정별 비교

구분	한-칠레	한-싱	한-EFTA	한-아세안	한-미	한-EU	한-인도	한-페루
소매 포장 기준	비고려	비고려	고려	비고려	비고려	고려	비고려	비고려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수송포장	비고려	비고려	비고려	비고려	비고려	비고려	비고려	비고려



근거규정	제4.10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	부속서 1 제7조2	부속서 3 제11조	제6.10조 제6.11조	의정서 제7조	제3.10조	제3.11조
------	------------------	------------------	---------------	---------------	------------------	------------	--------	--------

(7) 세트물품

① 정의

세트물품이라 함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말함. 즉, 원산지결정시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규정

② 세트물품 범위

한-EU, 한-EFTA, 한-미, 한-페루 FTA에서는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기타 FTA 협정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적용하여 세트로 분류시 해당 세트물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하고, 세트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각 구성품 별로 각각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함

③ 세트물품 예시

이발세트
(제8510호)

전기식헤어클리퍼(제8510호), 빗(제9615호), 가위(제8213호), 브러쉬(제9603호), 식물제 타올(제6302호)을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세트물품

제도키트
(제9017호)

자(제9017호), 계산판(9017호), 제도용 콤팩스(제9017호), 연필(제9609호), 연필깎기(제8214호)를 인조플라스틱의 케이스에 넣은 세트물품

④ 협정별 비교

구분	한-칠레	한-싱	한-EFTA	한-아세안	한-미	한-EU	한-인도	한-페루
비원산지 상품 허용한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규정 없음	일반품목: FOB가격의 15% 이하 섬유류: FOB 가격의 10% 이하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규정 없음	FOB가격의 15% 이하

07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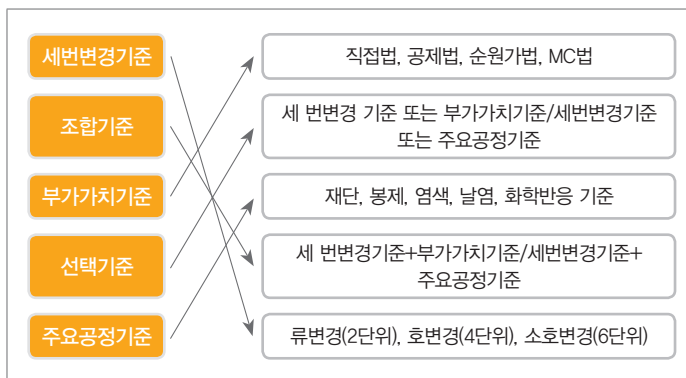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됨.

① 공통기준

- 품목별기준표에 “부”, “류” 등의 “주”로 규정함
- 일부품목은 개별기준으로 나머지는 공통기준을 적용함
 - 한-아세안 FTA(CTH or RVC 40%)
 - 한-인도 CEPA(CTSH + RVC 35%)
- 완제품과 재료의 HS(세번)가 같은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

② 개별기준

-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별로 규정함
- HS(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
- 상기 세 가지 기준을 조합한 조합기준 또는 선택기준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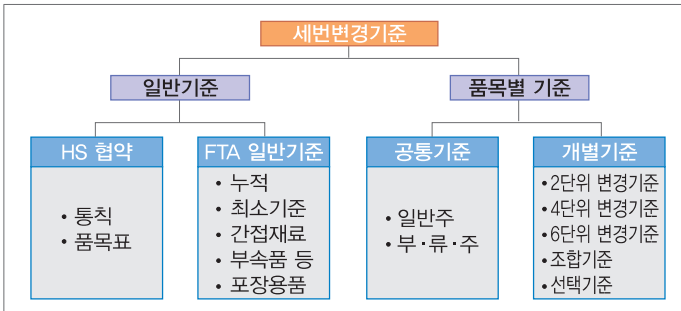


(2) HS(세번)변경기준

① 정의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은 제품이 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제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원재료 또는 부품)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역내산 재료(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 여부는 불문함

② HS(세번)변경기준 구조



③ HS(세번)변경기준 유형

- 2단위 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 한-아세안 FTA]
HS 1107.10 맥아(볶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hange to Subheading 1107.10 from any other Chapter
- 4단위 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한-EFTA FTA]
HS 1805.00 코코아 분말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 6단위 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한-페루 FTA]
HS 1512.19 해바라기씨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4 HS(세번)변경기준 대표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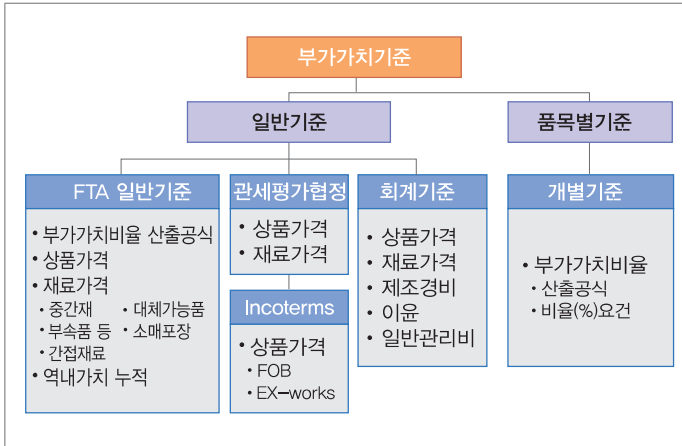
(3) 부가가치기준

1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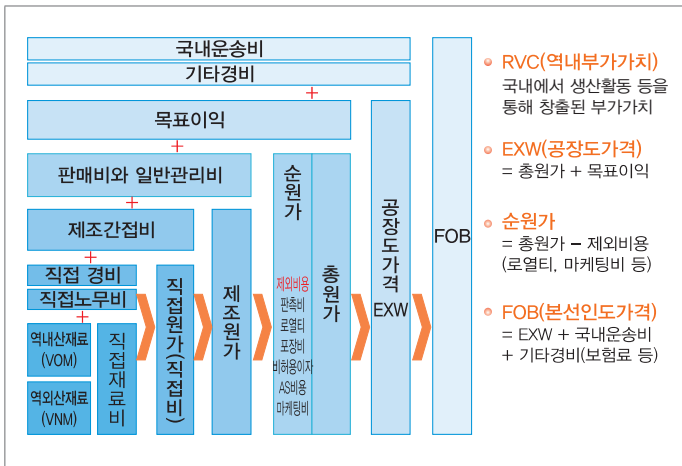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정공식 및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은 체결된 FTA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2 부가가치기준 구조



3 원가구성



4 협정별 비교

구분	싱가포르	인도	칠레	아세안	미국	EFTA	EU	페루
부가가치 요건	RVC (45~ 55%)	RVC (25~ 40%)	RVC (45~ 80%)	RVC (35~ 60%)	RVC (35~ 60%)	MC (30~ 60%)	MC (20~ 50%)	RVC (35~ 50%)
산출공식	공제법	공제법	공제/ 직접법	공제/ 직접법	공제/직접/ 순원가법	MC	MC	공제/ 직접법
상품가격 계산기준	FOB	FOB	FOB	FOB	FOB	EXW	EXW	FOB

5 부가가치기준 계산공식 유형

▶한-아세안 FTA 부가가치 계산공식 유형 분류

공제법 적용국가: 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직접법 적용국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상품가격(조정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공제하여 조정가격으로 나눈 비율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조정가격} - \text{비원산지 재료가격}}{\text{조정가격}} \times 100$$

- 조정가격: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서 선적 후 수입지까지 운임, 보험료 기타 서비스 비용들을 제외한 가격(일반적으로 FV ZOB가격, EU와 EFTA는 EXW가격)
- 비원산지재료가격: 수입원재료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료, 원산지 불명재료를 말함.



■ 순원가법(NC: Net-Cost Method)

상품가격(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 가치를 공제하여 순원가로 나눈 비율
한-미 FTA에서 적용 (자동차 및 그 부품에 한정)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 재료가격}}{\text{순원가}} \times 100$$

- 순원가 : 총비용에서 공제비용을 제한 가격
- 공제비용 : 관측, 마케팅, 판매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 포장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MC: import Contents Method)

비원산지재료비에서 상품가격을 나눈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한-EFTA, 한-EU FTA
에서 사용

$$\text{비원산지 재료비율} = \frac{\text{비원산지 재료비}}{\text{공장도 가격}} \times 100$$

- 공장도 가격 :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일반적으로 EXW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수출 시 환급되는 내국세는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
- 비원산지 재료비 : 일반적으로 CIF 가격, 알 수 없는 경우 생산국내 최초 확인 가격

■ 집적법(BU: Build-Up Method)

원산지 재료가격을 상품가격(조정가격)으로 나눈 비율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원산지 재료가격}}{\text{조정가격}} \times 100$$

- 원산지재료가격 : 원산지재료는 해당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 중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재료를 말함.
-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원산지 재료로 인정 가능.

6 조정가격(AV: Adjusted Value)

- 조정가격은 RVC 계산 시 관세평가협정 제 1조 내지 제 8조, 제 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외되지 않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임
-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포함하므로 통상 FOB가격이 됨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AV가격을 CV(Customs Value: 관세가격)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상 FOB가격을 의미하고 있고, 한-ASEAN FTA 및 한-인도 CEPA에서는 FOB로 표현하고 있음
- 반면에 한-EFTA, 한-EU FTA는 공장도가격(Ex-Works)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비율 산출시 분모 값에 해당하는 가격을 의미함

7 상품가격 계산기준

FTA 협정	기준가격	공제요소
칠레	관세가격(실제지급액)	국제운송비용
미국	조정가격(실제지급액)	국제운송비용
싱가포르	관세가격(실제지급액)	-
EFTA·EU	공장도 가격	환급 내국세
아세안	FOB	-
인도	FOB	-
페루	FOB	-

8 재료비 계산기준

■ 재료 개념 및 구분

재료라 함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요소 등을 의미하며, 재료에는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와 비원산지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있음



■ 재료비 계산기준

FTA	수입재료	국내조달재료	무료(할인)조달재료* 자가 생산재료
칠레(4.1조)	실제지급가격- 국제운송비	실제지급가격	생산제비용+이윤
미국(제6.3조)			
싱가포르(제4.1조)	실제지급가격+ 국제운송비	실제지급가격+ 매입제비용	
페루(제3.3조)	CIF	실제지급가격- 매입제비용	

[원산지 재료비에 대한 가산요소]

FTA	가산요소			
칠레(4.1조)	운송비 (국제+국내)	조세 (환급액 제외)	관세사 수수료	폐기물비용 (재활용분 제외)
미국(6.4조1)				

[비원산지 재료비에 대한 공제요소]

FTA	공제요소				
칠레(4.1조)	운송비 (국제+국내)	조세 (환급액 제외)	관세사 수수료	폐기물 비용 (재활용분 제외)	역내 생산 비원산지 재료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비
미국(6.4조 2)					
싱가포르(4.1조)	운송비 (국내)			-	-
인도(3.4조 5)					

FTA	원산지 재료비	비원산지 재료비
EFTA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정의에 따라 준용된 원산지재료의 가격 (제1조 가)	-과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내에서 지급한 최초 확인 가능가 격(제1조 하)
ASEAN	제조원가+이윤+운송비용 (제4조 2)	-과세가격(CIF)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 생산국 국내 최초 확인 가격(제4조 2)
인도	-	-과세가격(CIF)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 생산국 국내 최초 확인 가격(제3.4조 4)



EU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정의에 따라 준용된 원산지재료의 가격 (제1조 아)	-과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내에서 지급한 최초 확인 가능 가격 (제1조 사)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재료의 생산으로 초래된 모든 비용과 무역의 일반과정에서 추가된 이윤과 동등한 이윤 금액을 포함(주해 4)	역내 생산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비 공제 (주해3)

(4) 특정가공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f Processing Operating Criterion)

① 정의

주요공정기준이라고도 하며, 주요한 공정방법을 규정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섬유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HS(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조합기준 등으로 적용되는 기준임

② 특징

- 가공공정기준은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음
 - ➡ 어류 · 식물성 생산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은 HS(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
 - ➡ 섬유제품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이 주를 이룸
- 섬유류는 '개별기준'이 많으나, 어류 · 식물성생산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은 '공통기준'이 많음
- 한 · 미 FTA의 경우
 - 어류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면서 공통기준으로 "비원산지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양식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 ➡ 역외산 치어를 역내에서 양식한 경우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



지 물품으로 인정

- 식물성 생산품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
단, “해당하는 물품 중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인경·근경·삽수·접
수 또는 기타 산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고 규정
- ➡ 역외산 씨앗 등을 심어 역내에서 재배한 경우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
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농수산물실무예시 및 설명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01 2단위(CC) 세번변경기준 예시

제 품: A 스낵류

적용협정: 한-아세안 FTA

HS code: 1905.90

원산지결정기준: Change to subheading 1905.90 from any other Chapter

BOM(Bill of Materials) 및 원산지판정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원산지
A	1101.00	미국
B	1517.90	프랑스
C	1701.99	중국
D	0408.99	덴마크
E	2008.11	호 주
F	2501.00	불가리아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HS와 완성된 제품의 HS의
2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산지 충족

02 4단위(CTH) 세번변경기준 예시

제 품: B 소스

적용협정: 한-EU FTA

HS code: 2013.90

원산지결정기준: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원산지
A	1701.99	미국
B	3913.90	프랑스
C	3302.10	중국
D	0904.22	덴마크
E	0904.12	호주
F	2106.90	불가리아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HS와 완성된 제품의 HS의
4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산지 충족

03 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 예시

제 품: C 해바라기씨유
적용협정: 한-페루 FTA
HS code: 1512.19
원산지결정기준: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BOM(Bill of Materials) 및 원산지판정

품명(재료명)	세번번호	원산지
A	1512.11	미국
B	1206.00	프랑스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HS와 완성된 제품의 HS의 6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산지 충족

04 부가가치기준 예시

제 품: D 혼합주스
적용협정: 한-칠레 FTA
HS code: 2009.90
원산지결정기준: 공제법 80%이상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80% when the build-down method is used.

BOM(Bill of Materials) 및 원산지판정

품명(재료명)	세번번호	원재료가격	원산지
A	1701.99	50	한국
B	2009.19	70	한국
C	2009.31	30	미국
D	2009.71	50	한국
E	2009.50	100	한국

총재료비: 300원
공감도가격(Ex-Works 가격): 450원
FOB 가격: 600원

비원산지
재료비



역내부가가치비율이 공제법 기준으로 95%이상이므로 원산지 기준 충족

$$\frac{600-30}{600} = 95\%$$

05 미소기준 사례예시(비원산지재료 10% 이하 허용)

적용협정: 한-아세안 FTA

제 품: A 과자류 제품

FOB가격: 400원

Hs code: 1905, 90

원산지결정기준: CC(2단위 변경기준)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가격	원산지
A	1701.99	50	미국
B	1901.20	10	중국
C	1517.90	40	프랑스
D	2008.11	70	덴마크
E	2501.00	30	스위스



세번변경기준 판정 :
중국산 B 원료의 2단위가 변경되지 않아 "한국산"으로 불인정
아래의 미소기준 적용을 통한 한국산여부 판정



$$\text{미소기준 적용 : } \frac{10}{400} = 2.5\%$$



06 원산지 (포괄)확인서 수취를 통한 부가가치기준 충족 사례

적용협정: 한-칠레 FTA
제 품: AA 류스 제품
FOB가격: 600원
Hs code: 2009. 90
원산지결정기준: 공제법 80%이상

품명 (재료명)	세번번호	가격	원산지(포괄) 확인서 유무	원산지
A	1701.99	50	유	한국
B	1901. 20	70	유	한국
C	1517.90	50	무	미상
D	2008.11	100	무	미상
E	2501.00	30	유	한국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업체로부터 수취

$$\text{부가가치 판정} : \frac{600-150}{600} = 75\%$$

한국산
불인정

원재료 "D"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 비율 충족으로 "한국산" 인정가능

$$\frac{600-50}{600} = 92\%$$

한국산
인정

07 조합기준(Other 기준)

적용협정: 한-EU FTA

제 품: 조제식료품

Ex-works가격: 600원

Hs code: 2106, 90

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변경)+WO(1211,20호 및 1302,19호)+MC 30%(제 4류 및 17류)

품명 (재료명)	세번번호	가격	원산지(포괄)확인서 유무	원산지
A	1701.99	60	무	미상
B	3923.10	70	무	미상
C	2501.00	50	무	미상
D	3920.20	100	무	미상
E	1211.20	30	유	한국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업체로부터 미수취
원산지는 "미상"

원산지기준 분석:

-4단위 변경기준 여부 : 완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변경으로 충족

-1211,20호의 원재료 투입시 해당 원재료 완전생산기준 : 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충족

-사용된 재료가 4류 또는 17류 해당시 Ex-Works 가격의 30% 미만여부 : 1701,99호의 원재료가 사용되었으나 MC 10%로써 해당기준 충족



"A"재료의 MC 30%여부 계산 : $\frac{60}{600} = 10\%$

한국산
인정

08 조합기준(한-인도 CEPA)

적용협정: 한-인도 CEPA

제 품: A통조림 제품

FOB가격: 500원

Hs code: 1604.11

원산지결정기준: CTH+RVC 40%

품명 (재료명)	세번부호	가격	원산지(포괄)확인서 유무	원산지
A	0302.11	60	무	미상
B	3923.10	70	유	한국
C	2501.00	60	무	미상
D	3920.20	100	유	한국
E	1701.99	30	유	한국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업체로부터 미수취
원산지는 "미상"

원산지기준 분석:

-4단위 변경기준 여부 : 완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변경으로 충족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역내부가가치비율(RVC)이 76%이므로 부가가치기준 충족

$$\frac{500-120}{500} = 76\%$$

한국산
인정



09 선택기준(한-페루 FTA) : 세번변경적용

제 품: A사탕과자

FOB가격: 450원

Hs code: 1704, 90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50%(둘 중 어느 하나 기준충족시 "한국산" 인정)

적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으로 인한 한국산 충족/부가가치기준은 미충족

품명 (재료명)	세번부호	가격	원산지(포괄)확인서 유무	원산지
A	0302.11	140	무	미상
B	3923.10	70	유	한국
C	2501.00	100	무	미상
D	3920.20	60	유	한국
E	1701.99	30	유	한국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업체로부터 미수취
원산지는 "미상"



원산지기준 분석:

-4단위 변경기준 여부 : 원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변경으로 **충족**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역내부가가치비율(RVC)이 47%이므로 부가가치기준 **미충족**



$$\frac{450-240}{450} = 47\%$$



10 선택기준(한-페루 FTA) : 부가가치기준 적용

제 품: A사탕과자
 FOB가격: 450원
 Hs code: 1704. 90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50%(둘 중 어느 하나 기준충족시 "한국산" 인정)
 적용: 4단위 세번변경이 미충족으로 "한국산"불인정/부가가치기준은 충족

품명 (재료명)	세번번호	가격	원산지(포괄) 유무	원산지
A	0302.11	90	유	한국
B	3923.10	100	유	한국
C	2501.00	40	무	미상
D	3920.20	60	유	한국
E	1704.90	110	무	미상



"4단위 미변경"으로
 불충족 부가가치비율로
 판정적용

원산지기준 분석:

- 4단위 변경기준 여부 : 완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미변경으로 불충족
-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역내부가가치비율(RVC)이 67%이므로 부가가치기준 충족

$$\frac{450-150}{450} = 67\%$$

한국산
 인정

An Export Handbook in Applying FTA



04

CHAPTER

인증수출자제도

CASE 01. 인증수출자제도 개요

CASE 02. 농수산물 인증절차와 구비서류

인증수출자제도 개요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념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2)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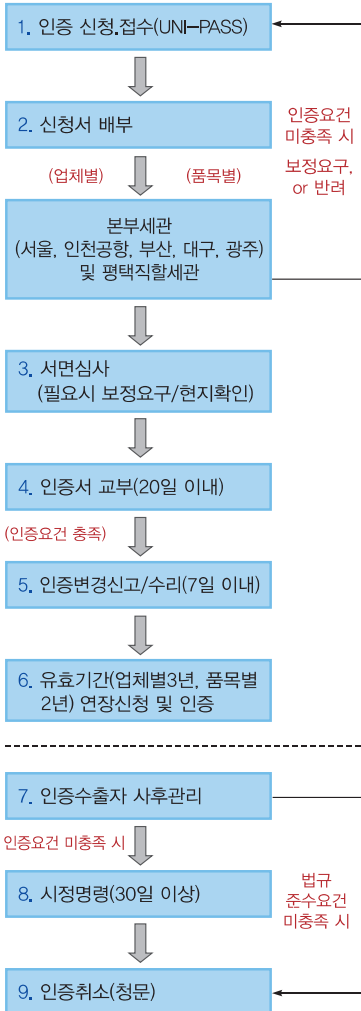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2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인증기간	본부세관(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3)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구분	인증 전	인증 후
한-EU	① 6,000유로 이하의 수출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가능	①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전산으로 신청) ②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③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② 첨부서류 제출 생략 ③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①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자료(통상 Invoice 신고서) 수출자의 서명 필요	①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페루	①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만 가능	①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4) 인증업무 절차



1. 구비서류

- ① 인증신청서
- ② 주요 수출(생산)품목의 원산지 소명서
- ③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
 - 원산지 (포괄) 확인서 등
 - 국내제조 확인서 등
- ④ 기타자료
 -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등

3. 보정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

5. 인증사항변경 신고(대표자성명 · 주소 · 사업
자등록 번호 ·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변경시)

6. 인증만료일 30일 이전 연장신청

8. 기간내 시정

9. 청문 시 소명자료 제출

농수산물 인증절차와 구비서류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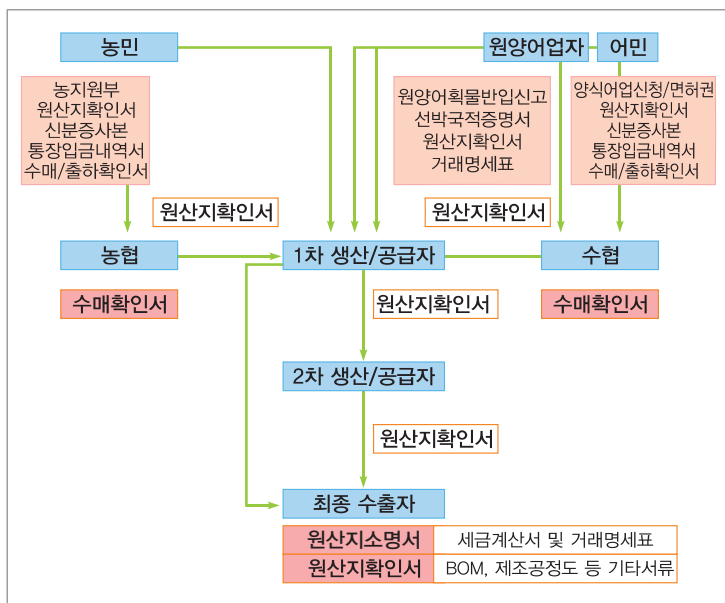
01 개요

-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및 기계 등과 달리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획득시 인증에 필요한 정보가 FTA 및 무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민이나 어민에서부터 제공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을 위한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맞는 구비서류가 준비되어야 함

02 인증업무 절차

인증수출자제도의 인증업무절차와 동일

03 농·수산물 원산지증빙 흐름





04 농·수산물 원산지증빙 구비서류 및 양식샘플

1 구비서류

- 농·수산물 원산지증빙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원산지증빙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농지원부, 직불금 받은 내역이나 수매확인서 등의 서류가 최초의 거래에서 원산지증빙을 위한 자료로 이용됨
- 수산물의 경우 어업면허권이나 원양어획물 반입신고나 수매확인서 등의 서류가 원산지증빙을 위한 자료로 이용됨
- 이들 증빙자료를 근거로 1차, 2차, 최종수출자에 이르기까지 거래에 관련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구비가 되어야 함

2 구비서류 양식 일부 샘플 (예시용으로 확정 양식은 아님)

출하확인서

농 지원 부

고유번호	
------	--

1. 일반현황

최초작성일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외겸업	농업경영 변동사항	
				사유	일자
준농업 법인	명칭	조직형태	사업목적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촌마을길 57-12				

세대원(업무집행사원)사항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사항			기재사항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사유	일자

2. 농지경작현황

구분	전		답		과수원		기타		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농지원부

수 산 물 수 매 확 인 서

산정기간 : 2009/3/10

발급번호	2009-574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수 매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수매내역						
일자	품목	수량	단위	금액	중도매인	비고
2009/3/10	국내산				(인)	
총 계						
용도	중개 확인용			농안사업명		
대출취급점				발급구분		
재발급 사유						
공급자 확인	상기 수매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직 인) 전 화 번 호 :					

※ 작성시 이면 유의사항 참조

선박국적증명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Cert. No. _____			
OWNERS		Name : _____ Address : _____	
Official Number _____ Name of Vessel _____ Signal Letters _____ Kind of Vessel _____ Material of Hull _____ Port of Registry _____ Riggings of a Sailing Vessel _____ Type and Number of Foabes _____ Type and Number of Propellers _____ Where Built _____ Name of Bulders _____ Date of Launch _____		Total Capacity of Enclosed Spaces _____cubic metres Under the Upper Deck _____cubic metres Closed-in Spaces above the Upper Deck _____cubic metres Forecastle _____cubic metres Bridge _____cubic metres Poop _____cubic metres Deck Houses _____cubic metres Other Spaces _____cubic metres Total Capacity of Exerapted Spaces _____cubic metres Forecastle _____cubic metres Bridge _____cubic metres Poop _____cubic metres Deck Houses _____cubic metres Other Spaces _____cubic metres	
Main Dimension	Length Breadth Depth	metres metres metres	
Gross Toonage _____		tons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particulars are exact in aU respect, and that the above-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 The day of REPUBLIC OF KOREA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of the above-mentioned Vessel. The <u>15</u> day of OCT. 2008			
ADMINISTRATOR OF		OFFICE, , REPUBLIC OF KOREA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						처리기간	
(확인번호)						서류심사시:즉시 물량확인시: 입항후 즉시	
조업선	(1)선 명	(2)본 수		(3)업 종			
	(4)조 업 구 역	(5)허 가 번 호		(6)허 가 기 간			
운송 수단	(7)선 명 또 는 항 공 편 명	(8)국 적		(9)본 수			
	(10)전 적 장 소	(11)전 적 일 시					
반입사항	(12)반 입 일	(13)반 입 장 소		(14)반 입 후 보 관 장 소			
(15)어 종	(16)반입형태	(17)어획기간	(18)반입량(M/T)	(19)포장형태	(20)어종수	(21)비고	
총계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양어획물 국내 반입코자 신고합니다. 신고일				검 사 원	직급 : 성명 :		
주소 상호 성명 전화				(인)	위의 신고사항을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확 인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영사무소장 귀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영사무소장 (인)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1. 선하증권사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반입하 는 경우)							
2. 적하목록사본(세관제출용) 1부(내국적 외항선인 본선으로 반입하는 경우)							
3. 하역협정서(지방해양수산청 제출용) 사본 1부							
4. 어획증명서 사본 1부(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한 이빨고 기류인 경우에 한하며, 농림수산부 장관의 기국확인번호를 부여 받은 것)							
5.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5)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요령

① 원산지(포괄)확인서 개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류로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함.

②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양쪽)

원산지 (포괄)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공급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 팩 스			
		주소(전자주소)							
2. 공급처 (수출자 /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 팩 스			
		주소(전자주소)							
공 급 물 품 명 세 서									
3. 연번	4. 품명·규격	5. 적용대상 협정	6. 품목번호 (HS 6단위)	7. 원산지 결정기준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 원산지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	[]			
					[]	[]			
					[]	[]			
					[]	[]			
					[]	[]			
					[]	[]			
					[]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증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작성·제공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뒤쪽)

작성 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 급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공 급 처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연 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품명·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5	적용대상 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6	품목번호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산지기준</th> <th>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가. 완전생산 물품</td> <td>- WO</td> </tr> <tr> <td>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td> <td>- CC - CTH - CTSH</td> </tr> <tr> <td>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범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 <td>- BD - BU - MC - NC</td> </tr> <tr> <td>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td> <td>- CTSH - BD</td> </tr> <tr> <td>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td> <td>-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td> </tr> <tr> <td>바. 주요공정기준</td> <td>- SP</td> </tr> <tr> <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 <td>- OP</td> </tr> </tbody> </table>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범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범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9	원산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화 인기간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0.12.01(작성일) - 2011.11.30 ※ 원산지포괄화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BOM등 제조사양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확인서 작성

공급물품 명세서									
3. 연번	4.품명·규격	5. 적용대상 협정	6.품목번호 (HS 6단위)	7. 원산지 결정기준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원산지	10. 원산지 포괄 확인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충족	미충족			
01					[○]	[]	KR		
					[]	[]			
					[]	[]			
					[]	[]			
					[]	[]			
					[]	[]			
					[]	[]			

■ 원산지포괄확인기간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제품A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확인서 작성 사례

■ HS CODE 대한 원산지기준 확인(FTA 포탈, 협정문 확인)

한-아세아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HS Code	품목명	기본세율	협정세율	연간쿼터(톤)	원산지기준
			2011 : 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2.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 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합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CTH).
2.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제품 A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확인서 작성 사례

공급물품명세서									
3.연번	4.품명 규격	5.적용대상 협정	6.품목번호 (HS 6단위)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01		한-아세안		CTH	[○]	[]	KR		
02		한-EU		CTH	[○]	[]	KR		
03		한-칠레		CTH	[○]	[]	KR		
04		한-EFTA		VAR(50)	[○]	[]	KR		
05		한-싱가포르		CTH	[○]	[]	KR		
06		한-인도		CTSH +RVC35	[○]	[]	KR		
					[]	[]			

④ 원산지소명서 작성요령

원 산 지 소 명 서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 팩 스		
	주소(전자주소)					
2.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 팩 스		
	주소(전자주소)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4.HS No.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		6.원산지 결정기준		
	금 액					
7.주요생산과정						
원 재 료 명 세 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 산 지 인 정 요 건 검 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2.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3.기 타		예 ☐ 아니오 ☐
24.원산지 결정		충 족 ()		불 충 족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로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근거를 작성하여 설명하는 서류임



작성요령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수출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생산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포함) 등을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HS No.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물품 가격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o” 표기합니다. • 금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원산지 결정 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으로 적습니다.
7	주요 생산 공정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o o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8	연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재료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10	HS No.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원산지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
12	가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13	공급자 (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 · 주소 · 전자주소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14	합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 23	원산지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표기합니다. •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원산지 결정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o”를 표기합니다.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작성사례 (한-인도(CEPA) 자유무역협정 적용)

물품명세					
3.품명/규격			4. HS No.	3610.90	
5. 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Ex-Works()		6. 원산지 결정기준	조합기준(CTSH+RVC 35%)
	금 액	USD 6640			
7. 주요생산공정	1. 2. 3. 4. 5. 포장공정 6. 제품				

원재료명세서						
8. 연번	9. 재료명	10. HS No.	11. 원산지	12. 가격		13. 공급자 (생산자)
				수량	가격	
1			미상	1,980kg	₩2,476,990	
2			한국	488kg	₩650,520	
3			미상	488kg	₩641,628	
4			한국	495kg	₩287,100	
5			미상	495kg	₩310,660	
14. 합계		원산지재료(국산)			₩937,62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3,429,278	
		합계			₩4,366,898	

■ 대상국 및 품목확인

- 협정대상국, 양허품목인지, 수출하는 제품의 HS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먼저 확인

■ 원재료 구입경로 확인

- 원산지 결정시 기초가 되는 생산공정, 재료내역 및 원재료의 구입경로, 구입가격 등을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등 확인

- 수출신고필증, INVOICE, 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



원재료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BOM)가 필요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Bill of Materials)

완제품 품명/규격 : AL-FLU [작성지]업체명/담당부서 : (주)○○○ 영업부 담당자 : 강호동(인)

Part No	부품명/규격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소개	제조자	구매자	연락전화	확인자료
1		중국	11kg	₩1,251/kg	₩1,376	도요타	MBC		
2		한국	0.26kg	₩1,390/kg	₩361	혼다	SBS		
3		태국	0.26kg	₩1,371/kg	₩356	소니	KBS		
4		한국	0.275kg	₩580/kg	₩159	샤프	YTN		
5		중국	0.275kg	₩628/kg	₩173	캐논	MNET		
6									
7									
소요부품합계					₩2,425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수율 : 50%

	부품원가	직접원가	간접원가	제조원가	이윤	판매가
가격(원)	₩2,425	₩817	₩700	₩3,242	3%	₩4,060
중요내역	원재료	노무, 제조비	판매관리비			

An Export Handbook in Applying FTA



05

CHAPTER

사후 관리 및 검증

CASE 01. 사후관리

CASE 02. 검증



사후관리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1) 서류보관

① 생산자가 보관해야할 서류

문 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 · 제공한 서류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당해 물품의 생산관련 증빙서류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구입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FORMULA) 및 공정명세서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원재료원산지확인서 수취대장
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원재료원산지확인서
기타 원산지 판정을 위해 사용한 자료 및 그 결과물

② 수출자가 보관해야할 서류

문 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전자문서 포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
수출신고필증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거래계약서
당해 물품의 생산관련 증빙서류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구입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FORMULA) 및 공정명세서
해당물품의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내역
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원산지(포괄)확인서
기타 원산지 판정을 위해 사용한 자료 및 그 결과물

③ 현지 수입자가 보관해야할 서류

문 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품목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에 관련한 자료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문서보관 기간

- 각 협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정체약국 및 상대국의 권한 있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30일 내에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원산지품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산지 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관세의 납부 및 양벌규정에 따른 제반 제재를 받아야 하므로, 회사는 최소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해당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구 분	수출자/생산자		현지수입자	
	기산일	보관기간	기산일	보관기간
한-ASEAN	C/O발급일	3년	수입일자	5년
한-US	C/O발급일	5년	수입일자	5년
한-EFTA	C/O발급일	5년	수입일자	5년
한-EU	C/O발급일	5년	수입일자	5년
한-India	C/O발급일	5년	수입일자	5년
한-Chile	C/O발급일	5년	수입일자	5년
한-Singapore	C/O발급일	5년	수입일자	5년
한-Peru	C/O발급일	5년	수입일자	5년

FTA특별법	수출신고수리일	5년	수입일자	5년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	5년	수입신고수리일	5년

(3) FTA 원산지증명 관련 양벌 규정

회사는 FTA원산지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태만, 과실 및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벌칙

구분	2천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발급·작성·교부한 자	-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작성·교부한 자
	- 증빙서류 미보관자	
	- 허위자료 제출자	
	-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 특정물품 용도 외 사용자 등	
	- 양벌규정(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동조의 벌금형 부과)	

②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원, 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FTA 특별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부과됨

③ 과태료

구분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수정신고 불이행자
	-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 무단 저세를 용도 사용자 등

(1) 개념

협정의 원산지심사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증명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하며, 광의의 원산지심사는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세율·운송경로·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2) 검증의 목적

- ①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②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장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③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④ 역내간 교역과 투자촉진
- ⑤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3) 검증방법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한·칠레	- 수출국 세관에 정보요청	서면질의 정보요청 방문조사
한·싱가포르	- 수출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소명서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한·EFTA	-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없음
한·아세안	-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방문조사
한·인도	-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방문조사
한·EU	-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공동조사
한·페루	-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방문 조사
한·미*	- 섬유제품의 경우 제한적 간접검증 방식 적용	정보요청 서면질의 방문조사



(4) 검증 주요 체크포인트

- ①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 ②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경과여부
- ③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증명서 양식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
- ④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 거래)
 - 다만, 비당사국 중개인이 개입하여 송품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인정
- ⑤ 협정세율 적용 대상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여부
- ⑥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⑦ 제3국 원산지 물품 우회수입 여부
- ⑧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비당사국 단순 경유시 일정 조건하에 인정)
- ⑨ 자료보관 의무



An Export Handbook in Applying FTA



06

CHAPTER

FTA활용지원제도

CASE 01. aT지원사업안내

CASE 02. 기타기관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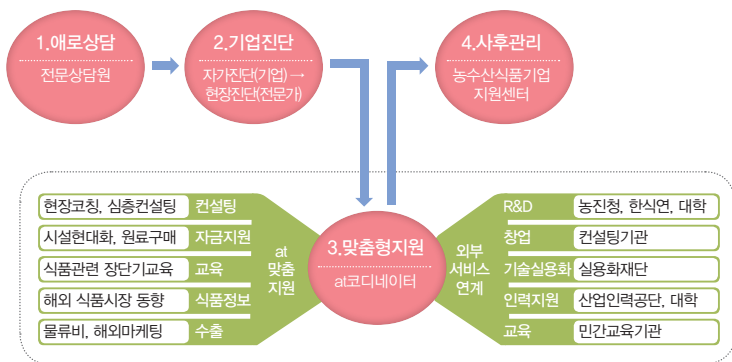


aT지원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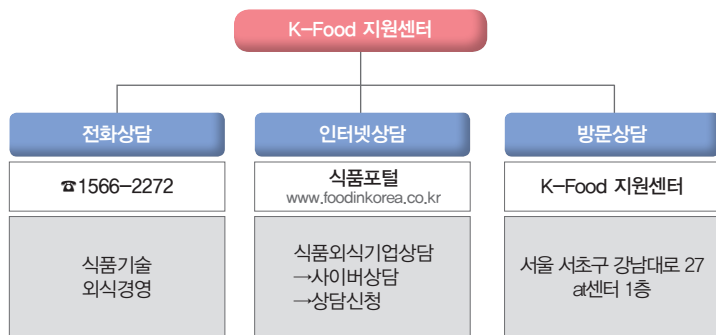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지원

01 업무흐름도



02 이용방법



03 주요사업

■ 심층컨설팅

- 식품외식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분야 심층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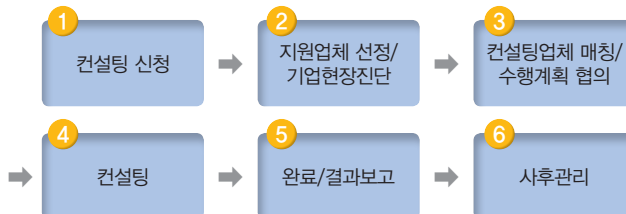
사업대상	중소 식품제조 · 가공 · 수출업체, 외식업체
지원조건	총 컨설팅 비용의 50% 국고보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70% 국고보조

컨설팅분야

분 야	내 용
경 영	경영전략, IT, 물류효율화, 전자상거래, 소비자선호도, 홍보전략, 인사, 재무
기 술	인증(HACCP, ISO22000, 건강기능식품 GMP, 탄소성적표지), 신상품개발, 제품영양설계, 유통기한설정, 식품안전진단
수 출	해외시장개척, 무역실무, 수출기반 조성
외 식	매뉴개발, 홍보마케팅, 교육, 프랜차이즈, 창업

단, 제조를 하지 않는 수출업체는 수출분야 컨설팅, 외식업체는 외식분야 컨설팅만 지원 가능함

컨설팅 프로세스





신청방법

aT식품포털(www.foodinkorea.co.kr) → 공지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사업담당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심층컨설팅 담당자

전화 02-6300-1734~5 팩스 02-6300-1630





■ 현장코칭

- 현장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경영 및 기술 전문위원이 식품외식기업을 직접 방문 하여 애로사항을 해결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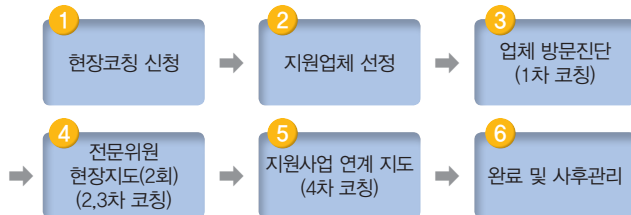
사업대상	중소 식품제조·가공·수출업체, 국내 한식당
지원조건	현장코칭 신청금 납부(100,000원)

컨설팅분야

분 야	내 용
경 영	경영개선, 마케팅, 재무, 생산성향상, 인사, 지적재산권, 디자인
기 술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정개선, 품질관리, 위생관리, 공장신설·증축
수 출	수출정보, 관세정보, FTA 대응방안 등
한식경영개선	메뉴, 위생, 마케팅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안지도

단, 제조를 하지 않는 수출업체는 수출분야 코칭, 한식당은 한식당운영분야 코칭만 지원 가능함

현장코칭 프로세스



신청방법

aT식품포털(www.foodinkorea.co.kr) → 공지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사업담당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현장코칭컨설팅 담당자
전화 02-6300-1738 팩스 02-6300-1630

수출자금지원

1 운영활성화자금

개요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사업자(수출목적 저장·가공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연 3.0%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4.0% (단, 지원업체 사업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 우수업체 0.5% 금리인하)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 이상 수출이행 • 배정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 사업의무 달성 가능액(최대 200억원) • 자금배정 및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기지원</th><th>수시지원(신규업체)</th></tr> </thead> <tbody> <tr> <td>배정시기</td><td>2월</td><td>연중</td></tr> <tr> <td>배정기준</td><td>직전년도 수출실적 70% 전전년도 수출실적 30% 반영한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td><td>수출신용장(L/C) 80%, 수출계약서 30% 또는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td></tr> </tbody> </table>		구분	정기지원	수시지원(신규업체)	배정시기	2월	연중	배정기준	직전년도 수출실적 70% 전전년도 수출실적 30% 반영한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	수출신용장(L/C) 80%, 수출계약서 30% 또는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
구분	정기지원	수시지원(신규업체)									
배정시기	2월	연중									
배정기준	직전년도 수출실적 70% 전전년도 수출실적 30% 반영한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	수출신용장(L/C) 80%, 수출계약서 30% 또는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									
예산규모	• '12년 예산 : 324,200백만원(정기 310,200 / 수시 10,000)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지원안내 신문공고 (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신규업체 연중) → 대출 (희망시기) (여신약정 · 담보취득) → 사업추진 (수출이행) → 사후관리 (수출실적 증빙확인)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 행장 발행) 또는 수출 신고 사본 ※ 공사 소정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사후관리	• 대출금 부당사용 : 대출중단 및 정성금리의 위약금 별도 징구 • 사업의무 미달 : 대출중단 및 위약금 징구 - 자부담(10%) 사업비 미만 : 2년간 대출중단 및 위약금 징구 - 자부담이상 사업의무액 미달 : 위약금 징구 • 지원업체 평가(평가시기 : 매년 1/4분기) - 사업의무액 이행실적, 수출신장률, 매출액대비 수출비중 등 평가										
담당부서	• aT 자금지원팀 김상연 과장(02-6300-1155)										



2 우수 수산물자금

개 요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수출용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수출하는 업체(할어패류 등은 가공과정이 없는 경우는 가공과정 제외)
지원내용	- 재원 : 수산발전기금 - 용도 : 수산물 수출을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 지원금리 : 생산자단체 연 3.0%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4.0% (단, 지원업체 사업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 우수업체 0.5% 금리인하)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이상 구매 및 수출이행 - 배정최고한도 : 50억원(수협중앙회 대출잔액 포함) - 배정기준 - 최근 2개년 평균 수출실적 80%, 당해연도 선적분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20%로 가중치 산출하여 배정 - 지원업체 종합평가결과 우량업체는 평점에 50%, 유망업체는 30%의 가점을, 미흡업체는 30% 감점하여 배정
예산규모	12년 예산 : 80,400백만원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 대 출 (지원희망시기) ⇒ 정 산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가공업체),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확인), 수출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사본 ※ 공사 소정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완료되어 대출진행 중 - 향후계획 : 대출포기금 발생시 추가배정 추진
담당부서	aT 자금지원팀 김상백 차장(02-6300-1152)

수출정보제공

1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개요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물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서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어민,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모든 농수산물 수출정보 수요자														
지원분야	해외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무역정보														
지원내용	- 기본이용 카테고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서비스내용</th></tr> </thead> <tbody> <tr> <td>무역정보</td><td>국내외 수출뉴스 및 자료, 수출입동향, 해외시장정보 등</td></tr> <tr> <td>무역지원</td><td>수출지원, 시장개척, 박람회, 수출절차, 안전성 정보 등</td></tr> <tr> <td>품목정보</td><td>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정보 등</td></tr> <tr> <td>국가정보</td><td>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국가정보</td></tr> <tr> <td>무역통계</td><td>수출입통계, 해외도소매가격, 국내가격정보 등</td></tr> <tr> <td>고객센터</td><td>고객상담, 공지사항, FAQ, 개선의견 등 고객참여서비스</td></tr> </tbody> </table> - 농수산물뉴스 발행 : 주2회(화, 금) 농식품 수출입 관련 기사 서비스 신청고객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 수출정보 SOS 서비스 운영 : 개별 특화요구 정보를 일대일 맞춤형 제공	구분	서비스내용	무역정보	국내외 수출뉴스 및 자료, 수출입동향, 해외시장정보 등	무역지원	수출지원, 시장개척, 박람회, 수출절차, 안전성 정보 등	품목정보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정보 등	국가정보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국가정보	무역통계	수출입통계, 해외도소매가격, 국내가격정보 등	고객센터	고객상담, 공지사항, FAQ, 개선의견 등 고객참여서비스
구분	서비스내용														
무역정보	국내외 수출뉴스 및 자료, 수출입동향, 해외시장정보 등														
무역지원	수출지원, 시장개척, 박람회, 수출절차, 안전성 정보 등														
품목정보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정보 등														
국가정보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국가정보														
무역통계	수출입통계, 해외도소매가격, 국내가격정보 등														
고객센터	고객상담, 공지사항, FAQ, 개선의견 등 고객참여서비스														
예산규모	'12 : 11억원(무역정보 조사 : 3.8억원, 무역정보 전파/KATI 운영 : 7.3억원)														
이용방법	- 기본이용 : KATI 홈페이지 접속(www.kati.net) ⇒ 회원가입 ⇒ 정보이용 - 수출정보 SOS : KATI(www.kati.net) 접속 ⇒ "고객센터)고객상담)수출정보신청" 클릭 ⇒ 필요정보 내역 게시														
추진현황 및 계획	- KATI 개편 및 수출관련정보 통합을 통한 One-stop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수출안전정보 DB구축 및 제공 - 수출현안 · 이슈분석 정보 제공 : 월간 aT Focus														
담당자	- KATI 회원가입 및 이용 - 식품수출정보팀 김희진(02-6300-1395) - 수출입뉴스 - 식품수출정보팀 이나래 사원(02-6300-1399) - 수출정보 SOS, aT Focus - 식품수출정보팀 이나래 사원(02-6300-1399)														



2 인터넷거래알선(AGRO TRADE)

개 요	인터넷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상설 해외 홍보, 전문화된 인터넷 마케팅 기법으로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과 무역 거래 알선으로 저비용 수출 판로 개척 및 자력 인터넷수출 지원 (www.agrotrade.net)
지원대상	- 스마트 마케팅 : 농식품 수출업체 - 한국 농식품 거래알선 : 농식품 수출업체, 해외 바이어
지원내용	- AgroTrade 스마트 마케팅 지원 - 빠르게 확산 중인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QR코드로 연결하는 스마트 카달로그와 모바일 웹,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최신 마케팅 지원 - 인터넷 수출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100개)하여 제반 무역 프로세스 대행 - 수출상품 스마트 카탈로그 제작 배포, 프로모션, 바이어리스트 및 신용정보 제공 - 인터넷 무역의 전문가 그룹을 가진 업체를 통해 집중 지원 - 수출 농식품 거래 알선 - 수출 상품 및 Selling Offer, 바이어의 Buying Offer 등록 및 검색 - 수출 지원 정보 제공 70개국 12만여 바이어 DB를 통한 리스트와 바이어 신용 정보 제공 - 국내외 뉴스 및 타 사이트 오피 정보 자동수집 제공 - AgroTrade 바이어 상담회 관리 시스템으로 초청 상담회 운영 - 바이어 초청 상담회 신청시 AgroTrade 회원 가입 필수 - 한→일·중·영어 간 자동번역, 화상상담 시스템, 웹메일, PC원격 지원
예산규모	'12년 : 450백만원 (스마트 마케팅 300, 프로모션 80, 시스템운영 70)
추진절차	계획 수립 → 모집공고 (3월) → 전문대행사/지원업체선정 → 사업수행 ('12.4~'13.3) → 고객설문 및 사이트 방문자 분석 ('12.12) → 실적확인 ('13.4)
이용방법	- www.agrotrade.net 접속 ⇒ 회원가입 ⇒ 업체, 상품 및 오피 정보 수시 수정 - 스마트마케팅 지원 신청 : 수출업체정보 접속(www.at.or.kr) ⇒ 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AgroTrade 스마트 마케팅 지원 : '12. 100개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예정 - 수출 농식품 거래 알선 : 연중 24시간 수행
담당자	- 식품수출정보팀 - 김현영 과장(02-6300-1403)

수출지원 사업

① 수출물류비 지원

개 요	수출물류비의 지원한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물류비를 합산하여 수출업체에게 지원
지원대상	- 중앙정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25만\$ 이상인 업체 - 단, 일본채소류ID 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 한하여 지원 (일본 채소류ID 대상품목 :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갯잎) - aT 주관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된 품목은 협의회회원사에 한해 지원 (협의회품목 : 파프리카, 딸기, 배, 사과, 단감, 버섯, 양란, 김치, 인삼, 전통주, 막걸리, 유자차) - 지자체 : 수출실적과 상관없이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
지원품목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품목(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쌀 가공품, 녹차 등)을 기본적으로 함 - 단,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자체지원 품목 별도운용 가능
지원내용	-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35%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10%/수출업체)와 지자체(25%/수출업체+농가분) 분담하여 지원 '12.1.1~12.31 수출물량에 대해 지원(B/L상의 수출선적일 기준) / 중앙정부 매월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 지원액 = 수출물량 × 품목별 · 국가별 지원단가
추진절차	지원업체 사전 등록 → 신청서 접수 (매월 5일까지)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금액 계산 및 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연중지원
이용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지원신청서(전산출력) 및 수출증빙자료 제출(지사)
담당자	- aT 수출지원팀 - 담당자 : 박은정 과장(02-6300-1358), 홍장우 사원(02-6300-1356)



2 수출상품화 사업

개 요	• 농·수·임·축산물 통합 상품화사업 운영을 통한 수출유망 고부가가치상품 발굴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에 기여			
지원대상	• 국내 수출업체			
지원품목	• 농·수·임·축산물 및 가공식품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상품개발 / 수출상담활동 / 해외마케팅			
	• 지원내용(농식품 기준)			
	구 분	1년차(시장개척)	2년차(시장진입)	3년차(시장정착)
	지원대상	신제품 개발	제품현지화	시장진출 완료
	지원한도	20백만원	40백만원	50백만원
수출목표액	-		6만불 또는 전년실적 × 110% 중 높은 금액	10만불 또는 전년실적 × 110% 중 높은 금액
	정 산 액 (집행액의 80%) 지원한도 조정액과 집행액의 80%(지원비율) 중 적은금액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면접심사 → 타사업과 중복선정 여부 확인 후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30%) : 수출실적, 성장성, 안전성, 활동성 - 비계량평가(70%) : 업체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면접평가 결과 반영 및 가산점 제도 운영을 통한 비계량평가의 객관성 도모 · 비계량평가 시 선정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7인 이상)을 통해 객관성 제고			
추진절차	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2월) → 사업 약정체결 (3월)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총 67업체 선정 후 사업추진 중 • 계 획 : '12년 12월 연속지원업체 및 '13년 2월 신규업체 선정			
이용방법	• 모집공고 확인(global.at.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업체PT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관할지사) ⇒ 사업추진			
담당부서	• aT 수출개발처 및 각 지사 수출담당 - 농산물 담당자명 : 이세호 대리(02-6300-1378), 전민형 과장(02-6300-1379) - 수·임산물 담당자명 : 이무영 과장(02-6300-1495)			



3 직접세일즈(인큐베이션 수출)

개 요	• 신규 수출상품으로서 잠재력이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미흡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시장개척과 수출선 발굴 등 업무를 aT가 직접 수행하여 수출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품목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품, 신규 유망 수출상품 *기존 수출품과 경쟁으로 시장교란이 예상되는 품목과 수출시장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업체별 평균 20백만원(자부담금 10%) • 사업범위 : aT가 직접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계약 추진까지 위탁받아 대행 –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및 거래협상, 해외전시회 참가홍보, 해외 마케팅 테스트, 상품개발 컨설팅, 수출계약 추진 등																		
지원절차	<table><tr><td>상품발굴</td><td>→</td><td>사업검증 및 선정</td><td>→</td><td>인큐베이션 계약체결</td><td>→</td><td>시장개척</td><td>→</td><td>수출이행</td></tr><tr><td>자체발굴(상시) 공개모집</td><td></td><td>경쟁력, 시장성</td><td></td><td>사업 및 교섭권 위임</td><td></td><td>거래제의, 상담, 수출계약</td><td></td><td>거래알선 대행수출 등</td></tr></table>	상품발굴	→	사업검증 및 선정	→	인큐베이션 계약체결	→	시장개척	→	수출이행	자체발굴(상시) 공개모집		경쟁력, 시장성		사업 및 교섭권 위임		거래제의, 상담, 수출계약		거래알선 대행수출 등
상품발굴	→	사업검증 및 선정	→	인큐베이션 계약체결	→	시장개척	→	수출이행											
자체발굴(상시) 공개모집		경쟁력, 시장성		사업 및 교섭권 위임		거래제의, 상담, 수출계약		거래알선 대행수출 등											
선정심사 기준	<table><tr><th>평가항목</th><th>세 부 평 가 내 용</th></tr><tr><td>제품 시장성</td><td>• 수출상품 대상 수출규제 등 대내외 여건분석 • 목표시장의 트렌드, 현지기호, 바이어 수요, 최근 수출실적</td></tr><tr><td>공급 능력</td><td>• 국내 생산규모,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여부 • 국내외 안전, 품질, 기술, 생산시설, 특허인증 등 보유 여부</td></tr><tr><td>제품 경쟁력</td><td>• 인지도, 품질, 가격, 타제품과의 차별성 • 물류비용 및 유통기한의 적정성, 수익성</td></tr></table>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제품 시장성	• 수출상품 대상 수출규제 등 대내외 여건분석 • 목표시장의 트렌드, 현지기호, 바이어 수요, 최근 수출실적	공급 능력	• 국내 생산규모,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여부 • 국내외 안전, 품질, 기술, 생산시설, 특허인증 등 보유 여부	제품 경쟁력	• 인지도, 품질, 가격, 타제품과의 차별성 • 물류비용 및 유통기한의 적정성, 수익성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제품 시장성	• 수출상품 대상 수출규제 등 대내외 여건분석 • 목표시장의 트렌드, 현지기호, 바이어 수요, 최근 수출실적																		
공급 능력	• 국내 생산규모,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여부 • 국내외 안전, 품질, 기술, 생산시설, 특허인증 등 보유 여부																		
제품 경쟁력	• 인지도, 품질, 가격, 타제품과의 차별성 • 물류비용 및 유통기한의 적정성, 수익성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총 8품목 선정 후 사업추진 중 • 계 획 : '13년 1월 신규업체 통합모집 예정																		
이용방법	• 모집공고 확인(global.at.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담당부서	• aT 식품수출팀 – 담당자 : 송다니엘 대리(02-6300-1375)																		



4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사업

개요	• 해외 주 수출시장에 냉장·냉동 물류인프라 및 마케팅, 연구조사, 홍보 등 복합전진기지 구축 활용
필요성	• WTO협정 시 수출보조금(물류비 등)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중국과의 FTA 체결 대응과 현지시장의 직접적 공략을 위한 수출인프라 구축 • 중국은 냉장·냉동 물류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 시설 설치 필요
사업형태	• 형태 : 물류기능과 수출지원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 설치(청도) • 시설 : 냉동·냉장 물류시설 / 판매·전시홍보관 / 연구·조사센터 / 컨설팅, 상담센터 등 행정시설 • 운영 : aT는 전진기지 관리운영 및 수출 종합지원 기능 수행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해외전진기지 T/F 구성·운영('11.2월~) –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방안」연구용역 완료('11.4월) – 수출전진기지 현지법인 설립('11.10월) : 청도애트(aT)물류유한공사(靑島愛特(aT)物流有限公司) –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부지 MOU 체결('11.12월) • 향후계획 – 수출전진기지 건축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2.1월~2월) – 설계·사공업체 선정 및 인허가 완료('12.3월~9월) – 물류서비스 위탁운영업체 선정('12.8월) – 수출전진기지 물류창고 착공('12.9월)
담당부서	• aT 수출지원팀/청도애트물류유한공사(중국) – 담당자 : 김종수 사원(02-6300-1354) - 이선우 차장(86-532-6696-2280/중국)

5 해외물류기반 구축사업

개요	· 해외 냉장·냉동 물류서비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수출업체 및 해외바이어
지원내용	· 사업규모 : 국내외 50업체 · 운영지역 : 7개국 12지역(해외 aT 소재지역) · 지원내용 : 냉장·냉동창고 보관료(80%) · 지원방법 :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2월) → 모집 및 선정(3월) → 사업집행 및 정산(매월) (3~11월)
이용방법	<pre> graph TD A[수출업체] -- "② 선정" --> B[위탁 물류업체 (창고)] B -- "④ 운송" --> C[유통업체] B -- "④ 물품인도" --> D[바이어] D -- "③ 대금결제" --> A E[해외aT / 수출협의회] -- "관리감독" --> B B -- "⑤ 비용정산" --> E </pre> ① 오더 및 계약체결 ② 선정 ③ 대금결제 ④ 물품인도 ⑤ 비용정산 ⑥ 운송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5개국 9개지역 33업체 지원('11년) · 계 획 : 7개국 12개지역 50업체('12년)
담당자	· aT 수출지원팀 - 담당자 : 박정만 과장(02-6300-1355) 김종수 사원(02-6300-1354)



6 환변동보험 및 농축산물 수출보험

개 요	• 환율변동, 농산물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 수출물류비 지원업체 중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을 가입한 자		
지원내용	지원항목	환변동보험료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	• 선물환 및 범위제한 선물환 가입비	• 선적후-일반수출거래, 농수산물패키지 가입비
	지원비율	• 선물환 100%, 범위제한선물환 90%	• 가입보험료의 90%
	지원한도	• 10백만원 한도	• 10백만원 한도
	지원방법	• 보험 가입시 지원(가입시 자부담분 납부)	
	지급제외	• 한국무역협회 또는 지자체 등에서 보험가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 보험가입 이후 가입액 대비 수출실적 미달시 미달비율에 해당하는 지원액 회수 * 회수대상액 = [1 - (수출실적 / 보험가입액)] × 보험료 지원액	
추진절차	• 보험료 선급(매 분기) : 공사 → 무역보험공사(사업위탁체결)		
	보험가입 (수출업체 → 보험공사) → 지원대상확인 (보험공사 → 공사) → 보험가입 및 자부담분(10%) 납부 (수출업체 → 보험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공사 - 무역보험공사간 사업약정 체결완료 • 계 획 :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연중지원		
이용방법	• 수출업체는 보험가입과 동시에 공사로부터 자동으로 보험료 지원 (자부담은 업체 납부)		
담당부서	• aT 수출지원팀 - 담당자 : 박은정 과장(02-6300-1358) 홍장우 사원(02-6300-1356)		

7 국제박람회 참가

가. 종합박람회 참가

개 요	주요 해외식품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th>지원내역</th></tr> </thead> <tbody> <tr> <td>■ 부스임차료 (1부스)</td><td> - 중소기업 : 100% 지원 - 대기업 : 70%(중소기업기본법 기준) ※ 단, 1부스 초과시 100% 업체부담 </td></tr> <tr> <td>■ 장치비(1부스)</td><td> - 100% 지원 · 기본부스, 기본비품(쇼케이스, 상담테이블, 의자), 전기 1kw ※ 단, 1부스 초과시 100% 업체부담 </td></tr> <tr> <td>■ 냉장·동 비품</td><td>- 신선농산물 : 100만원 한도내 70% 지원</td></tr> <tr> <td>■ 전시품 운송통관비</td><td> - 신선농산물 : 100만원 한도내 70% 지원 - 가공식품 : 전통식품품질인증식품 70% 지원(50만원 한도) </td></tr> </tbody> </table>	항 목	지원내역	■ 부스임차료 (1부스)	- 중소기업 : 100% 지원 - 대기업 : 70%(중소기업기본법 기준) ※ 단, 1부스 초과시 100% 업체부담	■ 장치비(1부스)	- 100% 지원 · 기본부스, 기본비품(쇼케이스, 상담테이블, 의자), 전기 1kw ※ 단, 1부스 초과시 100% 업체부담	■ 냉장·동 비품	- 신선농산물 : 100만원 한도내 70% 지원	■ 전시품 운송통관비	- 신선농산물 : 100만원 한도내 70% 지원 - 가공식품 : 전통식품품질인증식품 70% 지원(50만원 한도)
항 목	지원내역										
■ 부스임차료 (1부스)	- 중소기업 : 100% 지원 - 대기업 : 70%(중소기업기본법 기준) ※ 단, 1부스 초과시 100% 업체부담										
■ 장치비(1부스)	- 100% 지원 · 기본부스, 기본비품(쇼케이스, 상담테이블, 의자), 전기 1kw ※ 단, 1부스 초과시 100% 업체부담										
■ 냉장·동 비품	- 신선농산물 : 100만원 한도내 70% 지원										
■ 전시품 운송통관비	- 신선농산물 : 100만원 한도내 70% 지원 - 가공식품 : 전통식품품질인증식품 70% 지원(50만원 한도)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 (2개월전) → 박람회 참가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총 23회 참가(종합박람회 12, 전문박람회 6, 현지유망박람회 5) - 계획 :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3월), 금년 10월 중 2013년 참가계획 확정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2회(3월, 10월)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신청 - 선정심사기준 :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시장진출 여건 등										
담당부서	- aT 해외마케팅팀(02-6300-1676) - 담당자 : 박람회별 상이										



나. 개별박람회 참가

개요	• aT 또는 유관기관이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구분	5대시장	기타시장
	지원 금액	4,000천원/1회	6,000천원/1회
	지원 항목	• 임차비 : 18㎡ 이내 • 장치비 : She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전시대, 테이블, 의자, 전기 등 •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온수기, 사식대, 냉장·동고 등 * 기타시장 : 1인 왕복 항공료 70% 추가지원	
	해당 지역	• 5대 수출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포함), 러시아, 대만	• 5대 수출시장을 제외한 지역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 전년 11월 / 하반기 : 당년 4월) → 박람회 참가 (연중) → 참가비 지원 (30일 이내)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2회(3월, 10월)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신청 • 선정심사기준 :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시장진출 여건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150회 • 계획 :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계획(3월), 금년 10월중 2013년 참가계획 확정		
담당부서	• aT 해외마케팅팀 - 담당자 : 선은경 사원(02-6300-1678)		

8 해외판촉행사 지원

개 요	•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협회,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단,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입점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추진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판촉마케팅 활동비(총 사업비의 80%,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발생비용의 50% 지원) - 지원항목 : 입차비·장치비, 시식행사, 홍보활동(매체광고, 전단지, 이벤트), 입점비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지원대상</th> <th colspan="2">지원한도(백만원)</th> </tr> <tr> <th>부류</th> <th>총합</th> </tr> <tr> <td>국내 공모</td> <td>수출업체 및 관련협회</td> <td>20</td> <td>30</td> </tr> <tr> <td>해외aT 공동기획</td> <td>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td> <td>30</td> <td>50</td> </tr> </table> * 단체 및 협회는 100백만원 이내 - 사업의무액 : 지원금액의 2배 이상 혹은 사업지원시 명시한 수출목표액 중 큰 금액(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한도 축소)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백만원)		부류	총합	국내 공모	수출업체 및 관련협회	20	30	해외aT 공동기획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30	50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백만원)											
		부류	총합												
국내 공모	수출업체 및 관련협회	20	30												
해외aT 공동기획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30	50												
지원절차	공고(1월) ⇒ 대상자 선정(2월) ⇒ 사업이행 약삭서 제출 (행사추진시) ⇒ 행사추진 (연중) ⇒ 결과보고 및 정산(연중)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12년 2월 현재 47업체 선정완료(총 사업량 62회) • 계 획 : 업체별 세부계획 보고 후 행사추진														
이용방법	• 모집시기 : 매년 1월 초(해외시장개척사업 통합공고)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 • 선정심사기준('12년 기준) - 계량(50점) : 수출목표 및 직전년도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인증서 및 제품 홍보물 보유여부), 해외aT센터 관할여부 등 - 비계량(50점) : 행사계획 및 품목·국가선정 적정성, 바이어현황 등 * 전년도 공사 판촉, 박람회 등 해외시장개척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적용														
담당부서	• aT 해외마케팅팀 - 담당자 : 박수경 대리(02-6300-1674)														



9 해외바이어 거래알선(Buy Korean Food)

개 요	• 해외aT 추천 우수바이어 일괄초청을 통한 대규모 '수출상담회(BKF)' 개최로 수출거래알선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바이어가 상담을 원하는 수출업체를 결정
지원내용	• 3박 4일 기준 • 바이어 항공료, 체재비 및 통역, 교통편의, 생산시설 및 유통매장 견학 등 – 항공료 : Economy Class / 숙박비 (객실료 실비지원) * 수출상담회 : 업체당 40분 이내 1:1 해당바이어 상담(무료통역 제공) / 업체당 10개로 제한
지원절차	해외바이어 추천 ⇒ 국내업체 신청 ⇒ 상담추선 ⇒ 상담회 개최 * '상담추선'은 바이어가 상담을 원하는 수출업체를 매칭
이용방법	• 모집시기 : 4월 / 9월 • 참가신청 : 농식품전자상거래사이트(www.agrotrade.net) → 상담신청 → 희망바이어 및 상담품목 입력 • 선정심사기준 : 초청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수출확대 가능성, 바이어역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Buy Korean Food 2011 개최('11.6,16-17) * 참가규모 : 바이어 90업체 / 국내 247개 수출업체 – KFE연계 Buy Korean Food 2011 Autumn 개최('11.11.9) * 참가규모 : 바이어 60명 / 국내 100여개 수출업체 • 계 획 – Buy Korean Food 2012 개최('12.5,8-9) – Buy Korean Food 2011 Autumn 개최('12.10월)
담당부서	• aT 해외관리팀 – 담당자 : 김의정 과장(02-6300-1684)

10 해외aT 지사화사업

개 요	• 해외 aT센터가 해외지사 역할대행에서부터 해외지사(법인) 설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대상지역	• 일본(도쿄 · 오사카), 중화권(상하이 · 베이징 · 칭다오 · 홍콩), 동남아(싱가포르, 방콕), 미국(뉴욕 · LA), 네덜란드(로테르담) * 해외 aT센터별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동시지원은 2개소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table><tr><th>구 분</th><th>지원내용</th><th>참가비</th></tr><tr><td rowspan="2">기본</td><td>해외시장 정보조사,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조사, 바이어 알선 및 수출상담, 시장개척활동 지원</td><td rowspan="2">보증금 1백만원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연간 25천원 내외)</td></tr><tr><td>해외지사 설립지원</td><td>파견직원에게 사무공간, 사무집기 및 통신망 제공, 해외지사 설립 관련 행정사항 및 해외마케팅활동 지원</td></tr><tr><td>프리미엄</td><td>품목 및 해외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서비스 제공 (업체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서비스 제공)</td><td>참가비 1백만원 납부</td></tr></table> * 해외aT는 해외지사 역할 대행을 하고 관련 경비발생 시 참가비에서 공제 원칙(초과시 추가납부)			구 분	지원내용	참가비	기본	해외시장 정보조사,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조사, 바이어 알선 및 수출상담, 시장개척활동 지원	보증금 1백만원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연간 25천원 내외)	해외지사 설립지원	파견직원에게 사무공간, 사무집기 및 통신망 제공, 해외지사 설립 관련 행정사항 및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프리미엄	품목 및 해외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서비스 제공 (업체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서비스 제공)	참가비 1백만원 납부
구 분	지원내용	참가비												
기본	해외시장 정보조사,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조사, 바이어 알선 및 수출상담, 시장개척활동 지원	보증금 1백만원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연간 25천원 내외)												
	해외지사 설립지원		파견직원에게 사무공간, 사무집기 및 통신망 제공, 해외지사 설립 관련 행정사항 및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프리미엄	품목 및 해외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서비스 제공 (업체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서비스 제공)	참가비 1백만원 납부												
지원절차	모집공고 (3월) → 심사/선정 (3월) → 약정체결 (4월) → 서비스 개시 (4월) → 사후관리 * 서비스 개시(시스템상) : 서비스요청(업체) → 요청사항 접수(해외aT) → 요청사항 처리 및 결과 입력(해외aT) → 업체 처리내용 확인(업체)													
이용방법	• 모집시기 : 3월 • 참가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사업'에서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수출실적, 수출준비현황(카탈로그, 포장표기 등), 사업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2011년 지원업체 : 56개 업체 • 계획 : 2012년 지원업체 : 55개 업체													
담당부서	• aT 해외관리팀 – 담당자 : 김현호 과장(02-6300-1685)													



11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개 요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물량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등 수출선도조직 선정업체 * 매 연말(10월 예정) 익년 지원조직 선정
지원품목	16품목 - 파프리카, 여름딸기, 새송이버섯, 단감, 백합, 장미, 김치, 유자차, 팽이버섯, 토마토, 멜론, 국화, 선인장, 겨울딸기, 사과, 밤 * 수출선도조직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품목 선정·지원
지원내용	- 수출선도조직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인센티브 지원(매년 100~150백만원/총사업비 70%이내) -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매년 표준물류비의 3~12%이내) - 정책자금지원시 가점부여 등(운영활성화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추진절차	운영계획수립 (전년 10월) → 모집공고 (전년 10월) → 사업자 선정 (전년 12월) → 사업추진 (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
이용방법	모집공고 확인(www.at.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현장실사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관할지사) ⇒ 사업추진
담당부서	- aT 농산수출팀 - 담당자 : 양재준 차장(02-6300-1447)

기타기관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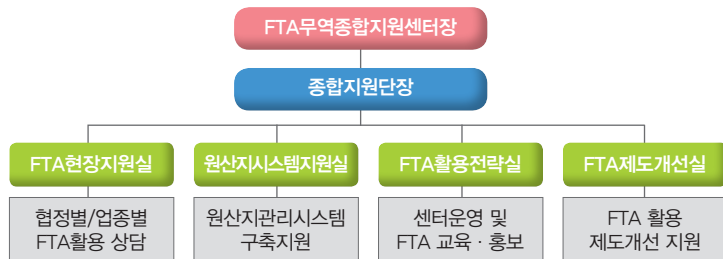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01 조직구성

■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KTNET 등



02 역할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정보제공

- FTA 활용정보 통합 제공
-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 FTA 활용정보 통합 제공
-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 교육 및 홍보

-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iting (교육+컨설팅)

■ 애로해소

-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컨설팅

-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지원 OK!
T.1566-5114/okfta.or.kr



FTA활용지원센터

01 지원내용

■ 기업 FTA 활용 전략 컨설팅 지원

- 종류 : FTA전문컨설팅, 초급 컨설팅, 해외마케팅 컨설팅 등
- 추진방법 : FTA 전문가(관세사, 회계사, 무역전문가, 원산지전문가) 1인 이상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 컨설팅내용 :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작성교육, HS품목코드 상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 컨설팅, 원산지 인증 수출자컨설팅 등 FTA업무 전반
- 신청절차
신청접수 ➡ 지원여부검토 ➡ 컨설팅수행기관 서류전달 ➡ 방문일정 조율 ➡ 사전분석, 컨설팅실시, 결과보고 ➡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 업종별, 지역별 FTA 활용 전략 설명회 개최

FTA 체결국별 시장 현황, 관세,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을 사례 중심 설명

■ FTA 활용전문 양성 교육

대상지역 : FTA 수혜업종 수출 중소기업이 밀집한 시군

과정 : 원산지관리사,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무역, 원산지, FTA활용 등 4개 과정

02 문의처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	031-259-7204
인천 FTA 활용지원센터	032-810-2852
대구 FTA 활용지원센터	053-751-5765
부산 FTA 활용지원센터	051-990-7082
울산 FTA 활용지원센터	052-287-3060
광주 FTA 활용지원센터	062-350-5864
대전 FTA 활용지원센터	042-480-3042
전북 FTA 활용지원센터	063-711-2045

경기(북부) FTA 활용지원센터	031-259-7204
강원 FTA 활용지원센터	033-256-3068
충북 FTA 활용지원센터	043-229-2721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041-539-4504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	061-282-9774
경북 FTA 활용지원센터	054-454-6601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	055-210-3005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064-757-2164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 FTA활용 지원센터 활용

FTA-PASS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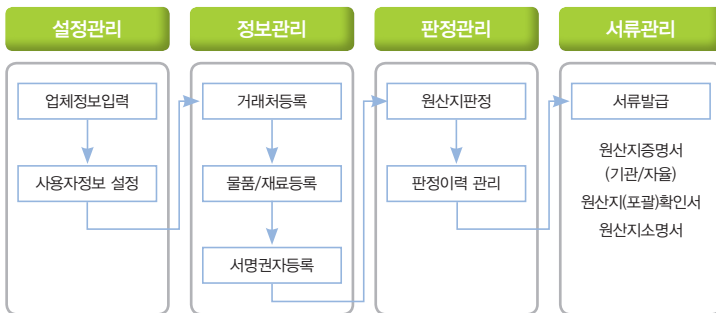
01 시스템 개요

-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중소 제조기업을 위하여 관세청 지원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구분	PC용 FTA-PASS	웹용 FTA-PASS
사용방법	www.ftapass.or.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사용 가능	
	개인 PC에 설치하여 사용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사용
버전	2.0X	-
자료저장	개인PC	운영서버
사용자	1인	다수
지원협정	한-아세안, 한-인도CEPA, 한-EU, 한-페루,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포르, APTA, 한-미국	
주요기능	표준형	- 9개 협정 원산지판정 - 기준정보(3종), 거래정보(3종) - 원가 및 근거서류관리 등 - 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발급 - 원산지확인서/소명서 발급 - 원산지확인시 송·수신 지원 - 다양한 판정관련 통계 제공
	LITE 일반/섬유의류형	※엑셀양식 6종 - 기준정보 : 거래처, 자재명세서 - 원산지증명서(자율) 발급 - 원산지확인서/소명서 발급 - 원산지확인서 수신 지원 - 거래정보 : 원가관리, 근거서류, 완제품가격관리
	① 표준형(HS 1류~97류) ② LITE 일반형 (HS 1류~49류 및 64류~97류) ③ LITE 섬유/의류용 (HS 50류~63류)	통합운영
사용대상 업체	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FTA 체결국에 수출입 하고 있거나 수출입 예정기업 • 상기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②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사용자 매뉴얼	PC용 FTA-PASS >도움말 메뉴 (설치된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음)	웹용 FTA-PASS >도움말 메뉴

02 사용방법

- www.ftapass.or.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승인후 이용가능
- 메뉴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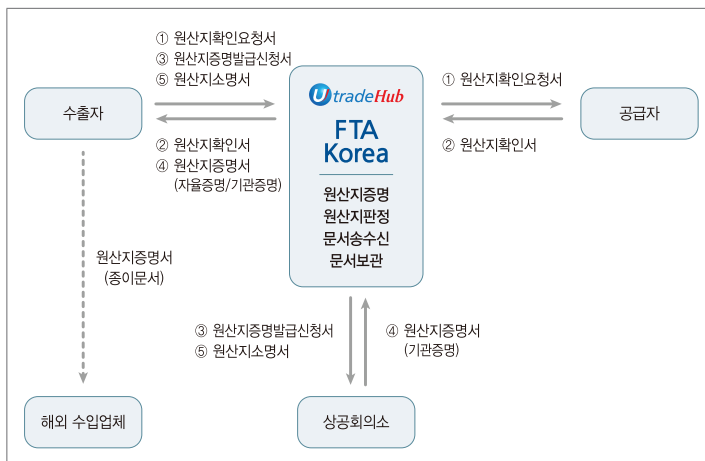
문의사항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사업팀
- 전화 : 031-600-0724
- 메일 : fta-pass@origin.or.kr

FTA-KOREA 서비스

01 FTA Korea 서비스 개요

- FTA Korea는 국가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인 uTradeHub에서 제공하는 FTA 원산지관리 서비스입니다.



02 FTA Korea 서비스 특징 및 장점

- 인터넷서비스 방식이므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구축비용이 없음
- 자사 ERP 보유업체의 경우 FTA Korea와 Web service 연계에 의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 활용(기준정보, 구매, 생산자료 등 자동 연계 지원)
- uTH의 전자무역업무와 전자무역문서보관소 활용 가능(5년간 자료보관)
- 공급자와 수출자간에 전자문서로 송수신한 원산지확인서는 자동 저장되어 별도의 재입력 과정 없이 원산지판정을 수행할 수 있음



- KINET은 지난 20년간 국가전자무역인프라 및 공인인증기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 : Trusted Third Party)로서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03 FTA Korea 서비스 내용

구분	주요기능
FTA 정보 조회	• FTA 협정정보, FTA Rule 관리, FTA 옵션 관리 • HS 조회 및 관리 기능, 국가별 HS코드 관리 • 협정별 세율 관리, 협정별/제품별 매출금액
기준정보 관리	• 표준 자재명세서(BOM) 관리 • ITEM/구매업체/판매업체 관리 • 제조공정 관리, 비용정보 관리, 소급정산 관리
원산지판정 관리	• FTA 원산지 판정 시뮬레이션 • 원산지확인서 수취 관리(수취대상/수취율/메일발송이력) • 완제품, 구성품별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이력관리
전자문서 송수신	• 송수신 관리 (원산지확인요청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사후 관리	• 근거자료 수집 보관(소명서), 발급문서별 이력 관리 • 서명관리대장,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04 FTA Korea 서비스의 원산지증명 자료 입력 방식

원산지 판정 및 증명을 위한 구매, 생산, 매출 자료의 입력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 1 직접 입력 방식 : 사용자가 FTA Korea 서비스 화면에 직접 입력
- 2 엑셀 업로드방식 : 사용자가 FTA Korea 서비스에서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자료를 작성한 후 일괄 등록
- 3 자동연계방식 : 사용자의 ERP내 자료와 FTA Korea를 자동 연계
 - 사용자가 ERP에서 자료를 입력하면 FTA Korea서비스에 자동입력
 - 자동연계 개발지침서는 KINET에서 제공
 - 연계컨설팅 및 개발은 전문 개발업체에서 수행(업체규모 및 ERP종류에 따라 비용 발생)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 관세평가분류원

01 원산지 사전심사의 개요

-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자(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

* 한·미 FTA협정 제7,10조 사전심사

02 한-미 FTA 원산지 사전심사의 내용

- (신청인 및 신청시기) 수입자·수출자·생산자/수입 前
- (심사 대상) 품목분류, 가격, 원산지, 쿼터나 관세율할당 적용 여부, 원산지 표시, 관세환급, 납기연장, 관세감면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관세환급, 납기 연장 또는 그 밖의 관세감면의 적용

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바. 원산지 국가 표시

사.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항

- (공표 의무화) 사전심사 결과 회신 후 인터넷 공표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90일
- 발급당사국은 사전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을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0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절차

- (신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

- ①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 i) 신청인, 수입자 및 수출자(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 ii)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품목번호 및 가격
 - iii)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 품목번호, 가격 및 원산지
 - iv) 당해 물품의 제조과정(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v) 사전심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 vi)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보정)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반려

- ①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③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심사결과 통지):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다만, 보정기간不算입)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 단,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심사결과 이의제기)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 가능

04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내용 활용

-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05 사전심사 업무의 권한 위임

- 사전심사 업무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FTA 특례법 시행령 제28조의3)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의 처리,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의 권한 등



기타 FTA에 관한 궁금증 및 의문사항

- 전화 : 1577-8577
- 홈페이지 : <http://call.customs.go.kr>



[별지 제22호 서식]

사전심사 신청서				처리기간90일	
1. 신청인	☐ 수입자 ☐ 관세사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2. 수입자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3. 수출자 또는 생산자	(알 수 있는 경우 성명, 주소, 국가)				
4. 신청품목					
품명	HS번호(6단위)	조정가격(\$)	물품 설명		
			구성, 생산과정, 용도 및 건본(가능한 경우)		
5. 원재료 내역					
원재료 품명	HS번호(6단위)	가격(\$)	원산지(결정근거)	생산과정	
.					
.					
.					
6. 사전심사 신청내용					
①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②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이 일어났는지 여부 ☐ ③ 물품이 역내부가가치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 ☐ ④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또는 물품의 조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절한 방법 ☐ ⑤ 중간재 가치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는 적절한 방법 ☐ ⑥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하는 물품이 면세처리될 자격이 있는 지 여부 ☐ ⑦ 기타 ☐ (상세 기재)					
7. 물품의 법적지위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표시를 하고, 물품의 성상을 나타내는 간단한 설명자료 첨부)				
① 원산지 검증 ☐ ② 행정적 심사 또는 불복청구 ☐ ③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 ④ 사전심사요청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신뢰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만약 허위나 잘못된 기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_____		작성일자 _____			
신청인과의 관계 _____		(신청인 대신 작성한 경우)			

※ 만약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다른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FTA활용 컨설팅 지원 - 관세청

0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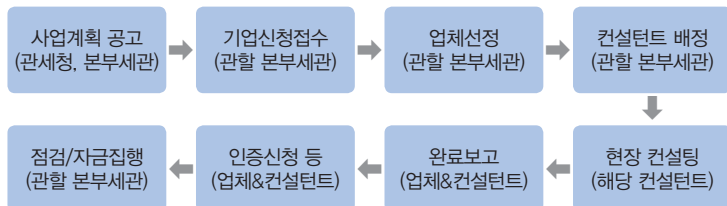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활용 무료 컨설팅 (인증 신청기업도 FTA-PASS활용 컨설팅 병행)

02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FTA 체결(예정)국에 수출입 또는 수출입 예정 기업
 - ② 위 ①항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적절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PASS 활용을 우선적으로 지원

03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진행절차



- (신청방법)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의 「컨설팅신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세관 방문신청

※ 기타 세부신청 방법은 각 본부세관별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 참조



04 문의처 등

- (사업총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이상목 사무관 (042-481-3280)
- (세부사항) 관할 본부세관 FTA 담당부서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본부세관	FTA 1과	02-510-1570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FTA과	051-620-6638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FTA과	032-452-3163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53-664-5255	대구 동구 동대구로 467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4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5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 중소기업청

01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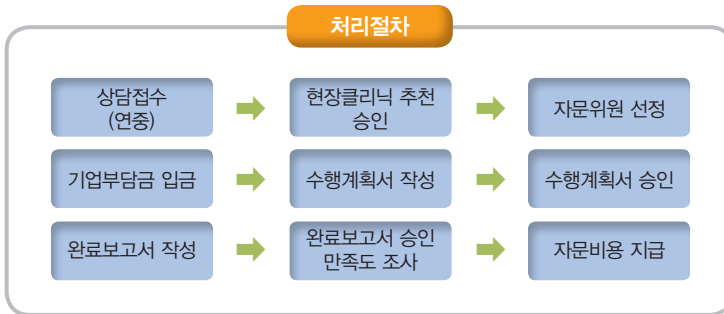
- 전문가 상담 : 지원 대상 제한 없음
- 현장클리닉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중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02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운영중인 비즈니스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여 온라인상담(www.bizinfo.go.kr), 전화상담(☎1357), 방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 FTA전담자 지정, 비즈니스 지원단 관세사 확충을 통한 매주 수요일 'FTA상담의 날' 운영
- 현장클리닉 지원 : 전문가 상담으로 해소되지 않는 단기 애로에 대해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단기간(3일 이내)에 애로 해결
- 현장클리닉 지원 세부내용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조직관리, 직무교육, 성과평가, 고용/산재보험, 근로계약, 노무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일반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안내, 기술보호 등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등
생산관리	생산관리,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	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정보, 관세, FTA 안내 등

03 현장클리닉 처리 절차



04 문의처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지방청	전화	팩스	주소
중앙수출지원센터	02) 761-4720~6	02) 761-4719	(150-7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3층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 509-6660~2, 509-6664~6	02) 509-665	(42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 601-5161~70	051) 341-0364	(618-270)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 659-224~6	053) 626-8771	(704-833) 대구시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단지 첨단로 132 (월암동 1111번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 360-9190~4	062) 366-9671	(502-20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 201-6940~6	031) 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 865-6150~5	042) 865-6159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 450-1132~7	032) 818-8364	(405-8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은봉로 3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 260-1670~5	033) 260-1679	(200-94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 230-5370~5	043) 235-2494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2~6	063) 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5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0~5	055) 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산월동 100-3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 723-2101~3	064) 723-2107	(690-130)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FTA닥터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01 사업개요

- FTA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원산지증명 애로해소, 원산지검증 대비 및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기업의 FTA활용능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 규모 : 1,000개 중소기업 (비용무료, 선착순)
- 대 상
 - FTA 체결(예정)국에 수출 또는 예정 중소기업
 - FTA 체결(예정)국 수출(또는 예정)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기업
- 주최/주관
 - (주최)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 (주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국제원산지정보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사업 주책임자
- 지원내용
 - 관세사, 회계사등 FTA전문가를 2-3일간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수출물품과 적용 FTA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주요 컨설팅 항목

- 수출물품에 대한 FTA협정관세 적용여부 검토
- 수출상품 및 원재료 HS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지원
- 사후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자료 보관 등 원산지 관리 방안
- 원산지관리시스템 및 인증수출자제도 활용방안

- 신청기간 :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http://fta.sbc.or.kr> 회원가입 후 신청화면에서 입력
 -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원재료구성내역(BOM) ③ 카탈로그

온라인시스템(<http://fta.sbc.or.kr>)에 첨부 업로드

02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전화 : 02)769-6954 FAX : 02)769-6720



An Export Handbook in Applying FTA



CHAPTER

07

부록

CASE 01. 유용한 홈페이지

CASE 02. 주요기관 연락처

CASE 03. FTA체결 주요국별 농수산물 수출영향

CASE 04.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및 확대방안

유용한 홈페이지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위원회 fta.korea.kr

기획재정부 www.mos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지식경제부 www.mke.go.kr

국토해양부 www.mltm.go.kr

농림수산식품부 www.mltaf.go.kr

관세청 FTA포털 fta.customs.g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http://fta.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투자지원센터 www.kbiz.or.kr

한국수입업협회 www.koima.or.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산업연구원 www.kiet.re.kr

칠레

국제경제협력부 www.direcon.cl

농산부 www.minagri.gob.cl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www.ccs.cl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www.fta.gov.sg



EFTA

유럽자유무역협정 www.eftaairtrade.org
<http://secretariat.efta.int>

ASEAN

ASEAN 홈페이지 www.aseansec.org
www.us-asean.org

인도

인도상공부 <http://commerce.nic.in>
 인도관세청 www.cbec.gov.in

미국

미국무역대표부 www.ustr.gov
 미국무역위원회 www.usitc.gov

EU

EU상공회의소 www.eucck.org
 EU홈페이지 <http://europa.eu>
 유럽집행위원회 www.ec.europa.eu

기타

일본 www.mofa.go.jp
 태국 www.thaifta.com
 오스트레일리아 www.austrade.gov.au
 WTO www.wto.org
 전 세계 FTA 현황 www.bilaterals.org

주요기관 연락처

FTA의 정의 및 내용 | FTA협정국에 수출할 때 매뉴얼 | 원산지결정기준 | 인증수출자제도 |

기관명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인터넷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위원회	02-2150-5714	http://fta.korea.kr
	양자관세협력과	02-2150-4482	http://www.mosf.go.kr
외교통상부	FTA이행과	02-2100-8115	http://www.fta.go.kr
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팀	02-2110-5393	http://www.mke.go.kr
농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2-500-1711	http://www.mifaff.go.kr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031-697-2553	http://fta.customs.go.kr
	인증수출자 심사센터	031-697-2561	
	고객지원센터	1577-8577	http://call.customs.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 지원센터	02-769-6661	http://www.taa.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상조사팀	02-3460-7332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추진단	02-6000-4681	http://fta.kita.net
전국경제인연합회	글로벌경영팀	02-3771-0310	http://www.fki.or.kr
대한상공회의소	인증서비스팀	02-6050-3003	http://cert.korcham.net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투자 지원센터	02-2124-3114	http://kbiz.or.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영지원본부	031-600-0732	http://www.origin.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02-3460-1087	http://www.kiep.go.kr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02-3299-3299	http://fta.kiet.re.kr

미국

01 대미 수출현황

- 2011년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599.8백만불 수준

* 대미 수출 : ('08) 4.4억불 → ('09) 4.6 → ('10) 5.2 → ('11) 6.0

- 수출실적 : 599.8백만불(신선농산물 76.8, 가공농산물 342.1, 수산180.9)
- 주 수출 품목은 김(38.7), 음료(33.8), 권련(29.4), 배(23.8), 굴(21.4), 라면(20.5), 비스킷(19.7), 오징어(15.8) 등임

* 과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은 장거리 운송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문제로 수출실적 미미

- 미국시장은 1,280억불 규모의 세계 1위 식품 수입시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식품의 점유율은 0.4%에 불과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커피, 새우, 와인, 맥주 등 주류, 목재류 등의 수입비중이 높고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의 국가가 주 수입대상국임

미국시장 농수산물식품 수입

(단위 : 억불)

구분	'09	'10	'11	주요 수입국('11)		
합계	979.0	1,100.4	1,281.3	1	캐나다	270.4
농산물	커피, 와인, 맥주, 토마토, 바나나, 보드카, 조제식료품, 사탕수수, 위스키, 팜유, 포도, 파프리카, 아보카도, 쿠키 등			2	멕시코	170.5
				3	중국	97.1
				4	브라질	52.7
축산물	쇠고기, 치즈, 돼지고기, 카제인, 꿀, 양고기, 우유, 소시지, 닭고기 등			5	프랑스	42.8
				6	태국	42.2
임산물	목재류, 가구류, 창틀, 검, 침목, 원료목, 목재섬유 등			7	칠레	38.7
				8	이태리	37.5
				9	인도	33.1
수산물	새우, 참치, 게, 장어, 문어, 연어 등			10	인도네시아	28.0
				37	한국	5.2

※ 자료 : Global Trade Atlas

* 코드집계상 차이로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실적과 한국의 대미국 수출실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02 한·미 FTA가 농수산물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국현행 관세율이 낮지만 대미 주요수출 품목의 관세 조기철폐 예정

- 미국 농산물 평균 관세율(임·수산물 제외)은 4.9%, 수산물은 1.0%로 낮은 수준임
- 하지만 미국 시장 주요 수입국가 중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FTA 체결하여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 기대

- 특히 대미 주요수출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5년 이내 철폐

* 농산물 품목수 기준 58.7%(대미 수출액 기준 82.0%) 관세 즉시 철폐

* 김치(11.2%, 즉시철폐), 라면, 된장, 고추장, 기타소스(BBQ)(6.4%, 즉시철폐), 조미김(6%, 즉시철폐), 아이스크림(20%, 5년 균등철폐), 버섯(8.8센트/kg+20%, 5년 균등철폐)

■ 양국간 문화, 외교, 무역 등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수출에 긍정적 효과 전망

- 미국에서 불고 있는 K-POP 등 한류 붐이 확대되어 신규 수요 창출 및 활발한 외식업체 진출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기대

* 한류열풍이 상품 수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가공식품(19.7%)은 화장품(26.8%) 다음으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한국 무역협회 '11.11)



03 대미 수출 확대방안

- FTA 발효에 따라 낮아진 관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집중 공략
 - 품질 · 보관성이 좋은 버섯류와 배 등 집중 마케팅 추진으로 수출 확대 견인
 - 특히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국인 중국과의 가격격차를 완화
 - 가공 식품 중에서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고추장 · 된장 등 소스류, 면류, 김의 현지인 시장 진출 확대
 - 현지인 식재료로 활용 가능한 제품 개발로 현지인 시장 진입

김 대미수출관련 FTA 활용 예

- 한미 FTA 발효로 기존 관세(6%) 즉시철폐로 가격경쟁력 확보하여 수출 확대 전망
 - * '11년 대미 김 수출은 38.7백만불로 전년대비 64.8% 증가하는 등 수출 급증
- 현지 유명 CIA(미국요리학교) 연계 김요리 16종 개발하여 기존 반찬용 소비를 스낵 및 식재료로 수요확산
 - * Whole Foods Market, Costco 등 현지유통업체 입점 · 판매 확대

- 식문화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으로 한국 식품 인지도 제고
 - 미국 현지사회에서 고급 한식당이 주목받는 등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문화 연계 다양한 마케팅 활용
 - * 미국 최고의 버거 콘테스트에서 비빔밥 버거 1위('11.5월) 및 뉴욕에서 최초 미술책 별 등급 받은 한식당(단지) 탄생('11.10월)
 -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농식품 수출홍보대사 '원더걸스'를 활용한 농식품 CM송, 홍보영상 등 마케팅 추진으로 신규 수요 창출
 - * 문화원과 합동으로 뉴욕 중심부 맨해튼에서 식문화 홍보행사와 K-pop 콘테스트를 연계하여 '맨해튼 K-Food & K-Pop Festival' 개최
- 식문화가 유사하여 진입장벽이 낮고 구매력이 신장하고 있는 Ethnic 마켓 (아시안계(15백만명), 히스패닉(49백만명)) 진출로 단계적으로 현지인 시장 공략



■ 현지인 시장 진입 가속화를 위한 유통망 공략 강화

-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MOU 체결을 통한 현지마켓 네트워크 확충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전략품목 입점 추진

* 미국지역 MOU 체결현황 : 6개(Melissa's, Titan Foods, Walong Marketing 등)

- 미국 유통시스템 핵심인 벤더 활용 마케팅 강화
 - 전문 벤더 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등으로 벤더 집중 발굴
 - 유력벤더와 직접 계약을 통해 미개척 대형유통업체 입점 추진
- 공공 조달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확보 및 소비자에게 제품 신뢰도 홍보로 제품 이미지·인지도 상승

* 미국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단일 규모로 최대 규모의 시장(약 1조 달러 수준)으로 국방부가 전체 정부 조달시장의 54% 차지

■ 비관세장벽(검역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강화로 수출 여건 개선

- 검역 등 비관세 장벽으로 수출이 어려운 신선농산물 및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상으로 신규 수출유망 품목 발굴

* 식물검역요건 해소로 사과 미국시장 최초 수출(137천불) 및 감귤 10년만에 수출재개(423천불)

■ 해외 조직망 확대 및 현지 수출자문단 운영을 통한 해외사업 강화

- 미국 메인마켓 공략 강화를 위해 미국 시카고 거점 확대
- 미국지역 aT센터를 통한 현지 수출지원자문단 운영 추진



EU

01 대 EU 수출현황

■ 2012년 대 EU수출은 전년대비 9% 증가한 362.9백만불 수준

* 대EU수출 : ('09)259.1—('10)332.7—('11)362.9

- 수출실적 : 362.9백만불(신선농산물 20.7, 가공 244.5, 수산 97.7)
- 주 수출품목은 참치(29백만불), 라면(12.3), 바지락(11.3), 음료(8.6), 면(8.0), 어류제품(5.4), 느타리버섯(4.8), 커피조제품(3.9)

■ FTA 발효이후('11.7~12)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

- 참치(-68.76%), 오징어(-65.34), 김(-19.16) 등 수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
- 버섯(63.96%), 배(51.58) 등 신선 농산물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임
- 면류(40.92%), 음료류(301.43) 등 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를 구가

농수산물품의 EU시장 수출 동향

(단위: 천달러, %)

구 분	2010.7~12		2011.7~12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산물	57,271	100,386	52,086	123,403	-9.05%	22.93%
축산물	138	1,207	21	962	-84.78%	-20.35%
임산물	1,642	2,744	1,943	3,373	18.34%	22.90%
수산물	26,403	71,501	16,429	46,347	-37.78%	-35.18%
합 계	85,454	175,838	70,479	174,085	-17.52%	-1.00%

■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품목별 수입규모 현황

(단위: 달러, %)

구 분	'09	'10	'11	'11년 점유율	점유율 증감률
네덜란드					
한국산 총 수입규모	6,096,928	6,270,926	8,625,951	0.02	37.55
버섯	2,956,032	2,803,368	5,173,100	32.43 (1위) 중국 (2위) 캐나다 (3위)	84.53
면류	1,833,009	2,286,586	3,063,976	5.60 (5위) 태국 (1위) 중국 (2위)	34
독일					
한국산 총 수입규모	7,168,734	6,080,777	6,592,841	0.01	8.42
버섯	674,794	876,381	926,948	0.99 (15위) 폴란드 (1위) 벨라루스 (2위)	5.77
면류	2,113,816	2,068,338	1,978,806	1.79 (10위) 이탈리아 (1위) 중국 (2위)	-4.33
스페인					
한국산 총 수입규모	47,427,586	46,524,493	55,683,437	0.24	19.69
참치	4,839,361	16,984,083	21,933,710	9.50 (3위) 멕시코 (1위) 프랑스 (2위)	29.14
조개	2,336,101	5,502,277	11,659,559	3.05 (10위) 중국 (1위) 페루 (2위)	111.90
영국					
한국산 총 수입규모	5,650,612	8,326,255	5,885,168	0.02	-29.42
버섯	9,304	29,203	79,681	0.12 (12위) 네덜란드 (1위) 폴란드 (2위)	172.85
면류	3,498,724	4,562,828	5,899,588	2.19 (7위) 이탈리아 (1위) 중국 (2위)	29.30

(자료: GTA)



02 한·EU FTA가 농수산물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적용관세에 따른 영향

- 전체적으로 EU수입 농수산물식품 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임
- 향후 대 EU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중 버섯, 배, 참치, 면류는 즉시철폐 품목으로 수출확대에 유리해진 품목임
 - 한국산 버섯은 EU수입시장의 7-10%, 전체 6위를 차지. 중국 등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함
 - 신선 배는 아르헨티나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 등 상위 10개국 대부분 수입규모가 감소함. 바이어들의 원산지 선호도 변화가 있으니 공세적 마케팅이 필요함
 - 참치는 EU수입시장의 약 13%를 차지. 멕시코, 베트남, 태국으로부터의 참치 수입규모가 급격히 증가. 22%나 부과되던 관세가 폐지되어 향후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면류는 EU시장에서 전년대비 약 30% 증가세임. 주요경쟁국 중국, 태국으로부터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음.

■ 향후 농식품 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수출확대 기대

- 현재 한국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유럽으로 유제품 및 축산물을 수출할 수 없음
- FTA 체결을 계기로 하여 수출금지 대상 품목들을 완화, 폐지할 경우 수출 확대 가능



03 대 EU 수출 확대방안

-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극대화함으로써 수출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EU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수출규모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마케팅 투자가 요구됨
- 한국 농식품의 경우, '11년으로부터 5년, 즉 '2016.6.30이면 모든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유럽 시장에서 가능성 있는 한국 제품들을 선택하여 마케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규모를 감소한 바이어들이 다시 한국산 제품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배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EU의 현지 마켓에 진출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식회 지원, 샘플배포 등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EU 현지에 위치해 있는 한국 문화원과 협동으로 한국 음식 강연 등의 음식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ASEAN

01 대 아세안 수출현황

■ 2011년 대 아세안 수출은 전년대비 43.4%증가한 1,031백만불 수준

* 대 아세안 수출: ('08)3.4억불—('09)4.5—('10)7.2—('11)10.3

- 수출실적 : 1,031백만불(신선농산물 145, 가공농산물 611, 수산 275)
- 주 수출 품목은 참치(152 백만불), 커피조제품(72.1), 껌(67.6), 과당(20.5), 김(20.5), 옥수수전분(19.1), 라면(19) 등임

■ FTA협정 발효('07)대비 2011년 기준 10.3억달러로 200.1% 증가

- 싱가포르의 딸기, 말레이시아는 단감 시장이 크게 성장
- 인삼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초고가 홍삼 제품군의 성공적인 런칭, 캡슐, 엑기스 제품군의 TV홈쇼핑 진출로 급성장 중에 있으며, 점차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성장세를 넓혀가고 있음
- 수산물은 태국을 중심으로 참치, 김 등 식품원재료용 수출이 지속 증가
- 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베트남의 한국산 노계 및 오리고기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따라 수출이 증가함

농수산 식품의 아세안시장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율*
농림수산물	343.8	451.3	521.1	719.8	1031.8	200.1
■ 농식품	213.6	271.0	325.4	521.6	756.3	254
－ 농산물	179.9	215.3	268.9	450.1	638.5	254.9
－ 축산물	23.3	39.9	38.6	38.2	42.5	82.4
－ 임산물	10.4	15.8	17.9	33.3	75.7	627.8
■ 수산식품	130.2	180.3	195.7	198.2	275.4	111.5

주) * 증감율은 2011/2007임 (출처:KATI)

■ 아세안 현지시장 부류별 주요 수입품목 및 수입국 현황

아세안 시장 주요 농수산물품 수입현황

(단위:백만 USD, %)

구 분	'09	'10	'11	점유율 비교*	증감율**
싱가폴	8,234	10,128	12,691	말련 18 (1위), 프랑스 9.56(2위)	25.30
對 한국	48	91	97	0.76 (22위)	7.13
과실류 ¹⁾	5	4	5	2.09 (11위)	10.00
채소 ²⁾	8	12	7	0.43 (16위)	-45.00
곡 ³⁾	2	4	5	45.27 (1위)	37.87
태국	7,193	8,776	10,972	브라질 13 (1위), 미국 11 (2위)	25.02
對 한국	155	192	296	2.69 (15위)	54.18
참치	102	93	135	10.18(3위)	43.84
김	10	13	15	38.38(2위)	10.52
인도네시아	8,753	11,698	17,093	미국 14.80 (1위), 호주 14.76 (2위)	46.11
對 한국	68	93	121	0.71 (21위)	29.32
옥수수전분 ⁴⁾	3	4	2	3.76 (3위)	57.13
필리핀	4,943	6,155	6,339	미국 22.93(1위), 말련 8.76 (2위)	2.98
對 한국	79	101	97	1.53 (15위)	-4.51
말레이시아	9,916	12,774	16,428	인니 23.81(1위), 태국 8.72 (2위)	28.60
對 한국	47	65	95	0.57 (28위)	46.07
수산물 ⁵⁾	7	7	9	0.52 (22위)	23.49
베트남	5,403	4,242	4,587	호주 16.7 (1위), 중국 9.2 (2위)	8.13
對 한국	109	153	275	5.9 (6위)	79.84
닭	10	16	18		9.83
오리고기	0.3	2	3		11.00
가공식품	0.1	2	5	6.4 ((5위)	129.19

주) * 2011년 기준.

** 2011/2010년 기준임.

1) 싱가포르 수입되는 과실류는 딸기가 7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사과, 배, 포도, 멜론이 각각 5.44%, 3.99%, 2.3%, 1.89% 차지하였음.

2) 채소류는 버섯이 전체 71.98%를 차지하며, 배추, 고구마, 토마토, 피망, 무 등도 적은 물량으로 수입됨.

3) 신선, 냉장, 냉동 곡 모두 포함한 수치임.

4) 중국, 한국, 미국은 50%이상씩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은 45%이상씩 증가.

5) 새우(11.87%), 굴(9.36%), 고등어(7.67%), 게(6.11%) 김(2.21%), 조개(1.31%) 등을 수입.



02 한·ASEAN FTA가 농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적용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

한-아세안 양허 현황					
구 분	일반품목(관세철폐)		민감품목 (관세인하)		
ASEAN 6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90% (5%제외가능)	2010	품목수: 10% (수입액: 10%)	20%로 인하	2012
	철폐완료	2012		5%로 인하	2016

- 한-아세안 FTA 발효 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100%이상의 기준 세율이 완전 철폐되어 수출확대에 유리해진 품목은 고추, 무,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딸기, 파프리카, 백합, 장미 등임
- 최근 ASEAN 회원국들의 빠른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성장에 따라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 농수산물식품의 3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향후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는 가격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개선 예정으로 향후 수출증가 기대

- 아세안과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으로 FTA에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별 물품별로 각각 발급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수출업체가 원치 않을 경우 제조자명과 가격정보(FOB) 등을 원산지 증명서에서 생략 가능토록 개선
-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3년 1월 1일까지 한-아세안 FTA협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아세안 측과 합의('12.3.1)



03 대 아세안 수출 확대방안

- 아세안 FTA 체결 국가별 소비자 선호도, 시장 특성에 맞춘 제품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⁷⁾
- 베트남의 경우 현지 쿨드체인시스템 미비로 조제분유, 밀크대용품, 김, 음료 등 홈쇼핑에 적합한 품목 발굴 필요
- 단맛을 즐기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유자차, 알로에, 커피, 과즙 음료 등 유망 품목 입점확대 추진
-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산 농수산물식품은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싼 편으로 인식되고 있어 소비자 수용성이 높은 가격범위로 포장단위를 맞춰서 판매해야 함
- 현지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지 대형유통매장을 발굴, 입점하는 것이 필요
- 수도권 행사에서 벗어나 지방·소도시로 판촉행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전혀 홍보가 없었던 미얀마, 캄보디아, 동 말레이시아, 동 인도네시아를 개발·진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출처 : GTIS, IE Singapore, ASEAN, GSO 베트남통계청, 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선비즈,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7) 말기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달면서 약간 신맛' 싱가포르의 경우 '강한 단맛의 사이즈가 큰'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01 과실류(사과, 배, 단감)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사과	3,404	9,363	19,633	8,759	17,945	3,409	8,874	△61.1	△50.5
대만	2,966	8,143	17,953	7,306	15,208	2,141	6,179	△70.4	△58.9
싱가포르	-	118	378	398	766	410	737	3.2	△3.8
배	49,180	47,384	53,770	23,099	54,117	17,990	47,268	△22.1	△12.7
미국	24,029	21,838	24,663	10,182	25,413	8,248	23,833	△19.0	△6.22
대만	22,138	22,118	24,731	10,494	24,283	7,702	19,166	△26.6	△21.1
단감	6,196	7,404	10,884	6,503	8,353	6,897	9,363	6.1	12.4
말련	3,112	3,738	4,790	3,339	3,577	3,360	3,995	0.7	12.1
싱가포르	440	896	1,543	935	1,161	1,323	1,694	41.5	46.6
캐나다	619	718	1,640	603	972	728	1,308	20.8	34.6

• 수출동향

- 사과, 배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국내 단가상승으로 '11년 수출은 감소하였으며, 대만·미국 등 주 수출국으로의 수출확대 부진
- 단감은 '11년도 생산량 증가 및 주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인근 동남아(베트남, 인니)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미국 시장 현황

- 배 미국 수출은 국내 생산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대체로 20백만불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한정된 교민시장을 벗어나 현지마켓 진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현지 생산, 타국산 동양배와 경쟁 불가피)
- 미국은 대표적인 사과 생산국으로 한국산 사과와 유통시기가 중복되어 교민시장 및 3~4월(납반구 생산 사과 수입전) 사과 유통 단경기에 수출시장 공략 필요



• 동남아시아 시장 현황

- 단감 최대 수출시장은 말레이시아로 최근 대형유통매장 입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근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사과, 배의 경우 현지인이 선호하는 중소과 수요가 많으며, 검역 및 안전성 관리가 취약하여 타국가에 비해 시장진입이 유리하나 고급시장 규모가 제한적

■ FTA 현황

• ASEAN FTA 체결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은 '10년부터 관세가 철폐되나,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 상호대응세율제도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짐

상호대응세율제도 적용시 과실류 국가별 수입세율(부가세 제외)			
구 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초민감 A] 사과, 배	30	30	15
[초민감 B] 단감	40	30	5

* 위 관세율은 태국 정부 및 현지 운송통관사를 통해 조사된 세율로 실제 적용세율은 변동 가능

• 한미 FTA 체결

- 과실류 주 수출품목(사과, 배, 단감)의 기존 관세(0.3센트/kg~2.2%)는 미미하며 FTA체결로 즉각 철폐됨
- 미국 과실 수입의 경우 관세는 즉시 철폐되나 검역으로 제한되어 있음

■ 수출확대 방안

- 배 : 미국 현지마켓(Sam's, Fresh&Easy 등), 동남아 유통매장 진출확대를 위한 중소과(11~12과/5kg) 공급 및 판촉 강화
- 사과, 단감 등 : 농약 등 생산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필요
- 각 품목별 2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의존도 분산 필요



02 파프리카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47,154	54,166	53,280	16,168	58,302	16,513	65,866	2.1	13.0
일본	47,089	54,075	53,182	16,162	58,277	16,488	65,744	2.0	12.8
기타	65	91	98	6	25	25	122	316.7	388.0

• 수출동향

- 일본 대치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하기작 수출물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등 신시장 개척과 적극적인 일본 소비촉진으로 65.9백만불 수출하여 사상 최고치 기록

- 수출국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어 다변화 모색 필요

* 일본 수출비중 : ('07) 99.9% → ('11) 99.8%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일본시장 현황

- '01년부터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 수입시장 규모는 27천톤 규모이며, 한국은 17천톤으로 시장점유율은 63%, 화란 17톤으로 22%, 뉴질랜드 4톤으로 14% 시장 점유

• 기타시장 현황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캐나다(12~2월), 호주(6~8월)는 최근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 중임

- 중국은 정부당국간 검역협상 중이며, 협상 타결시 수출확대 기대

■ FTA 현황

• 싱가포르, EU FTA 체결



- 싱가포르의 관세는 0으로, 즉시철폐 품목이며 현지 생산이 없어 수입에 따른 피해 없음
- EU의 관세는 7.2%이며, 즉시 철폐품목이나 생산강국으로 수요는 극히 적으며, 한국의 수입관세는 270% 또는 6,210원/kg로 현행유지 품목으로 분류
- 한미 FTA 체결
 - 미국 관세는 4.7센트/kg으로 즉시철폐 품목임
 - 한국 수입관세는 270% 또는 6,210원/kg이며, 15단계 균등철폐 품목임

■ 수출확대 방안

- 생산조직(시설)의 규모화 · 현대화
 - 노후 유리온실 시설현대화 및 온실환경 개선
 - 유류비 대체 난방 시스템(지열, 폐열 등) 도입 확산
- 한미 FTA체결에 따른 수확 후 관리 및 장거리(해상) 운송기술
 - 예냉, 포장, 컨테이너 온도 및 습도 등
- 대중국 파프리카 검역협상 추진



03 딸기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6,947	11,667	19,190	3,303	26,125	2,425	20,605	△26.6	△21.1
싱가폴	1,354	3,011	7,019	1,502	11,260	660	5,355	△56.1	△52.4
홍콩	1,525	3,509	5,019	831	7,245	795	6,683	△4.3	△7.8
일본	3,438	4,102	5,216	502	3,525	491	4,486	△2.2	27.3
말련	100	432	996	256	2,140	207	1,649	△19.1	△22.9

• 수출동향

- 태국, 여름딸기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주 수출국인 싱가포르, 홍콩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대비 21.1% 감소한 20.6백만불 수출

* 홍콩 ('10)7,245천불 → ('11)6,683(△7.8%) /싱가폴 11,260천불 → 5,355(△52.4%)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싱가포르시장 현황

- 신선딸기 시장규모는 '10년 3,113톤(U\$ 19,158천불)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미국산이 1,299톤으로 42%를 점유, 한국 39.8% 점유

• 홍콩시장 현황

- 시장규모는 '11년 4,857톤(U\$ 29,793천불)이며 미국이 3,256톤, 점유율 67%으로 가장 높고, 한국(1,227톤, 25%), 뉴질랜드(137톤, 3%) 순임

• 일본시장 현황

- 수입시장 규모는 '11년 3,395톤(35,147천불)이며, 미국이 3,395톤(점유율 94%)으로 최대수입국이며, 이어서 한국(188톤, 5.6%) 순임



■ FTA 현황

- 한아세안 FTA 체결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관세가 없으나, 태국은 상호대응세율제도가 적용되어 40%(또는 33.5baht/kg)가 적용
- 한EU FTA 체결
 - EU의 기준관세는 11.2%이나, 즉시철폐 품목으로 신시장 개척 가능성 있음
- 한미 FTA 체결
 - 미국 기준관세는 0.2~1.1센트/kg, 즉시철폐 품목으로 당초 관세가 낮음
 - 한국의 기준관세는 45%로 9년 균등철폐 품목임

■ 수출확대 방안

-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현대화 추진
 - 노후 온실 시설 현대화 및 온실환경 개선
 - 고설양액 재배시설 지원 확대
- 홍콩 등 해상 컨테이너 수출활성화를 통한 물류환경 개선
 - 해상 컨테이너 수출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품질 등급화를 통한 “프리미엄 딸기”수출 추진
- 연합 수출법인 출범을 통한 수출창구 단일화



04 토마토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4,563	4,797	3,886	2,303	6,642	3,186	9,653	38.3	45.4
일본	3,256	1,566	2,230	1056	3,859	1,655	6,565	56.8	70.12
중국	645	2,076	701	88	931	192	1,097	117.4	17.8
러시아	320	767	605	748	1,046	941	1,377	25.8	31.6

• 수출동향

- 일본 잔류농약 전수검사 해제 등으로 신선 토마토의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가공품은 중국내 경기회복, 러시아의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전체수출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9,653천불임

* 일본은 신선품, 중국 및 러시아는 케첩, 주스 등 가공품 위주로 수출됨

- 신선 토마토는 수출국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어 FTA체결에 따른 영향 적음

* 일본 수출비중 : ('07) 98.8% → ('11) 96.7%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일본시장 현황

- 일본의 신선 토마토 수입규모는 2,963톤으로 점유율은 한국산이 54.7%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미국 28.1%, 뉴질랜드 7.8% 순임
- 한국산 방울토마토는 3kg 박스로 수출되어 주로 업무용으로 유통되며, 약 10% 정도는 현지 소매점용으로 유통

• 기타시장 현황

- 토마토 가공품(케첩)은 중국, 러시아의 교민시장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음
- 신선 토마토는 홍콩, 러시아 등 신규시장 발굴을 위해 노력 중임



■ FTA 현황

• 한미 FTA 체결

- 미국 관세는 2.8~3.9센트/kg으로 즉시철폐 품목임
- 한국 수입관세는 45%이며, 7단계 균등철폐 품목임

• 한아세안 FTA 체결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관세가 없으나, 태국은 상호대응세율제도가 적용되어 40%(또는 4.18baht/kg)가 적용됨

■ 수출확대 방안

•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지 확대

-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수출단지 추가확보(화옹지구 간척지 등)
- 노후 온실 시설 현대화 및 온실환경 개선
- 신속한 농약안정성 조기진단기술 개발 및 저항성 품종 개발

• 수출국별 기호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

• 신선 토마토 일본 편중화 해소를 위한 신시장 개척



05 버섯류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8,633	23,185	33,039	21,178	38,885	18,241	38,231	△13.8%	△1.7%
중 국	61	4,195	9,413	5,096	6,458	3,223	5,000	△36.8%	△22.6%
베트남	346	259	162	1,399	2,212	3,130	5,070	124%	129%
네덜란드	2,167	4,207	2,736	595	2,456	1,114	5,158	87.1%	110.1%
미 국	3,393	5,256	6,797	3,839	6,889	3,018	5,991	△21.4%	△13%

• 수출동향

- 신규시장(팽이 : 베트남, 새송이 : 네덜란드)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력 시장인 중화권과 미국시장의 약세로 전체 수출실적 감소
- 중국 내 버섯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한국산의 수요 감소와 주요 수출국에서의 경쟁 심화가 수출 감소의 원인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미국시장 현황

- 주로 아시아인 마켓으로 수출되며, 중국산 및 캐나다산 등과 경쟁하고 있고, 일본 호쿠도사의 현지 유기농버섯 생산으로 경쟁 심화 추세
- 품질면에서는 한국산이 우수하나 중국산은 가격면에서, 캐나다산은 신선도 면에서 강점 있음

• 중국시장 현황

- 중국 정부의 버섯 산업 진흥 정책으로 자국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산 버섯 수입량은 '10년 7,322톤에서 '11년 3,782톤으로, 전년 대비 48.3% 감소



- 네덜란드시장 현황

- 한국산 버섯 수입량은 '10년 601톤에서 '11년 1,062 톤으로 전년 대비 76.7% 증가했으며, 한국산 점유율이 39%로 가장 높음

- FTA 현황

- 한싱가포르 FTA 체결

- 기준관세는 10.9%이며, 5년 후 관세철폐 품목으로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증가 예상됨

- 한EU FTA 체결

- EU의 기준관세는 기존 12.8%이며, 즉시철폐 품목임

- 한미 FTA 체결

- 버섯은 5년 균등철폐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 관세인하로 인해 시장개척 가능성 있음
∴ 관세율 : 8.8센트/kg+20% → 5년 후 철폐

- 수출확대 방안

- 선도조직(KMC, 머쉬엠) 연계 현지 신규 판매루트 개척 노력

- 대형유통업체 관촉행사 및 홍보 유도, BKF 버섯바이어 초청 등

- 한국산 버섯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 미국신선농산물박람회(PMA) 참가, 재외공관 홍보행사 등



06 장미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 계	8,025	11,811	20,132	3,810	34,235	2,338	25,676	-38.64	-25
일 본	7,965	11,428	19,262	3,799	33,911	2,316	25,060	-39.04	-26.1
러시아	60	371	852	9	309	14	454	49.42	46.94
미 국	-	-	-	-	-	3	71	-	-
중 국	-	-	9	0.4	5	1	44	118.08	881.36

• 수출동향

- '11년 일본대지진으로 장미수출의 최성수기인 3월 수출물량이 급감하였고, 내수용 스탠다드 장미 등으로의 작목전환 및 동절기 한파로 수출물량 확보 애로

* '11년은 25,676천불 수출하여 34,235천불 수출한 '10년 대비 25% 감소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일본시장 현황

- 일본시장 소비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 화훼시장 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수출확대 가능성 잔존

* 주력 수출품종인 스프레이 장미가 일본 수입산 시장 90%이상을 점유

- 일본 유통업체 직공급 확대로 판매루트를 다양화하고 고부가 가공상품 개발로 수출단가 상승 노력 필요

• 러시아시장 현황

- 일본시장 의존도 분산을 위한 시장다변화의 일환으로 대체시장으로 급부상

- 러시아는 꽃 소비가 생활화되어 있고, 주로 수입에 의존하여 시장개척 가치가 높음

* 연간 장미 수입 370백만불, 세계 4위 규모



- 러시아에서 흔치 않은 스프레이 품종 및 중 소형 화형을 현지시장에 소개판매하고 있어 틈새시장 확대 가능성

* 취약한 현지 물류체계 및 불안정한 통관검역절차 등의 애로사항 존재

■ FTA 현황

• 한미 FTA 체결

- 미국 기준관세는 6.8%, 즉시철폐 품목으로 당초 관세가 낮고 품목특성상 신선포유지 및 물류비용 과다 등 한계가 있음
- 한국 기준관세는 25%이며, 관세철폐 품목이나 미국은 장미 주요 수출국이 아님

■ 수출확대 방안

- 주력시장인 일본과의 FTA체결을 대비하여 선도조직 또는 수출협의회를 활용하여 수출창구 단일화 추진
 - 수출창구 단일화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교섭력 증대 및 수출시장 질서 확립 및 공동 물류 등 공동마케팅 실현
- 러시아, 중국 등 신규시장 개척
 - '07년 한국산 장미를 러시아에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나 시장 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상황(0.1%)으로 선도조직3사 연합개척활동을 통해 시장 확대
 - 중국의 장미 수입규모는 162천불로 작은편이나, 지리적 인접성과 품질경쟁력을 내세워 마켓테스트 활동 실시



07 조제분유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2,632	24,001	23,080	2,311	24,375	3,555	36,227	53.8	48.6
중 국	1,471	2,989	4,672	458	7,881	2,385	23,847	420.7	202.6
베트남	3,119	9,235	7,493	603	7,180	625	7,453	3.6	3.8
사우디	4,516	6,168	5,299	666	5,126	229	1,861	△65.6	△63.7
대 만	886	1,311	1,351	53	394	133	1,037	150.9	163.2
기 타	2,640	4,298	4,265	531	3,794	183	2,029	△65.5	△46.4

• 수출동향

-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재개 및 중국인들의 고품질 수입산 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 등으로 '11년 수출 급증
- 구제역 때문에 중단됐던 대중국 수출이 '10. 12월부터 재개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중국시장 현황

- 중국의 빠른 속도의 도시화와 중국내 자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지속적으로 분유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 ※ '08년 멜라민 파동 이후 잇따라 식품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이 커져 외국산 분유 수요 증가 기대

• 베트남시장 현황

-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개별가구 소득 수준 향상으로 고품질 및 기능성 분유제품 소비 확대 추세
- 정부의 가구당 1~2 자녀 인구정책으로 향후 고급 제품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FTA 현황

- 한세안 FTA 체결
 - 베트남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세율 15%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 인하 예정
- 한EU FTA 체결
 - 독일, 프랑스는 주요 수출국인 아니며, 수입관세는 TRQ물량(400메트릭톤) 무관세 적용되며 초과물량은 매년 3% 인하로 '21년 관세 철폐
- 한미 FTA 체결
 - 주요 수출국 아니며, TRQ물량(700메트릭톤) 무관세 적용 매년 3%인하로 '21년 관세철폐

■ 수출확대 방안

- 중국의 2선 도시 집중 공약을 통한 브랜드 홍보 강화
 - 대형유통매장(까르푸) 연계 중국 2선 도시인 동북·화북 및 북방지역 공격적인 시장개척 활동 전개
 -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분유 안전성 홍보
- 베트남 시장을 우선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마케팅 추진
 - 베트남 주요 도시에서 한국산 조제분유 세미나, 임신육아 교실개최
 - 언론 매체홍보를 통한 조제분유 인지도 제고
- 이집트·몽고 등 잠재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및 시장개척
 - 중동지역 현지 시장의 유통 및 소비 실태 조사
 - 약국을 초기 진입채널로 선정하여 시장 개척 추진



08 김치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70,309	85,295	89,386	29,672	98,360	27,430	104,575	△7.6	6.3
일본	66,120	75,051.7	77,621.6	24,134.4	82,781.2	22,055	87,822	△8.6	4.9
미국	2,375	2,061	2,268.5	868.5	2,695.1	794	2,794	△8.6	3.7
홍콩	1,162	1,305.2	1,380.2	536.3	1,776.6	683	2,413	24.5	35.8

• 수출동향

- 주요 수출국인 일본내 겨울철 김치 수요 증가 및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
-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권에서 국내기업 발전플랜트 수주로 인한 급식용 김치수요로 수출 증가세 지속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일본시장 현황

- 절임식품 소비율 감소 및 현지산 김치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점유율 축소 경향

• 미국시장 현황

- 미국은 주로 교민마켓 위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마켓자체 생산제품과 로컬 제조업체의 김치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 한국산 수입김치의 가격경쟁력이 열등한 위치에 있음

• 홍콩시장 현황

- 홍콩은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판촉 등의 홍보노력으로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급매장에서는 일본산과의 경쟁, 그 외 중소규모 매장에서는 중국산 김치와의 경쟁이 심화 중



■ FTA 현황

- 한EU FTA 체결
 - 현재 김치의 유럽수출은 소량이며, 관세율 6.4% 즉시 철폐
- 한미 FTA 체결
 - 관세율이 11.2%로 높지 않고, 현지 제조업체들과의 가격경쟁으로 가격할인이 많이 된 상태
 - ※ 일부업체의 경우 작년말부터 대미수출(뉴욕) 검역강화로 인해 수출애로 발생 (대상FNF)

■ 수출확대 방안

- 한류 및 식문화와 연계한 홍보행사 추진으로 김치 인지도 제고
 - 맨해튼 K-Food & K-Pop 축제 개최 : KPOP 컨테스트 및 김치, 불고기 등 한식 시연
- 한인, 아시안계 위주의 소비에서 현지마켓으로의 진입확산을 위한 소비자 체험 마케팅 및 대형유통업체 판촉전 개최
- 한미FTA 원산지 증명 관련 국내식품수출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세관 협조)



09 인삼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92,075	97,229	108,915	3,298	124,204	3,695	189,305	12.0	52.4
중 국	3,568	6,752	6,830	417	16,148	640	45,607	53.4	182.4
홍 콩	22,138	30,900	27,989	104	27,789	148	38,891	42.8	40.0
대 만	17,348	11,985	16,068	411	23,565	659	37,804	60.4	60.4
일 본	24,029	26,791	34,484	538	29,809	516	33,095	△4.2	11.0
미 국	7,019	7,898	8,310	613	9,631	510	11,143	△16.8	15.7

• 수출동향

- 주요 수출국인 중국·대만 등 중화권 고소득층 증가 및 건강 인식 확대로 홍삼 수요 지속 급증
 - 섭취가 간편한 홍삼 가공품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
 - 한국산 뿌리삼의 경우 중국에서 6년근만 표준품질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고가로 판매되고 있음
- 유럽은 재정위기 여파로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기대
- 인삼 효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소비확대에 장애로 작용
 - 인삼을 단순히 '약'으로 인식, 효능에 대한 이해 미흡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미국시장 현황

- 대미 인삼 수출규모는 11.1백만불('11)으로 홍삼(뿌리삼, 조제품)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 * 대미 인삼 수출 : ('07) 7.0 → ('09) 8.3 → ('10) 9.6 → ('11) 11.1
- 미국도 인삼생산국이나 자국내 유통량은 12%에 불과하고 소비계층도 아시아계, 히스패닉계에 한정되어 대부분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

- 수입산은 홍콩, 중국, 대만 등의 점유 비중이 높으며 한국산은 주로 교민과 아시아계가 소비

■ FTA 현황

• 한미 FTA

- FTA체결에 따라 인삼액즙(1%), 인삼음료(0.2센트/리터), 추출올레오레진(3.8%), 기타가공품(6.4%)의 관세는 발효 즉시철폐
- 절편은 현 16%에서 5년 이내 단계적 철폐(12.8%→9.6→6.4→3.2→0)
- 뿌리삼은 현재 무관세 품목으로 FTA 발효 이후에도 현행대로 유지

• 기타국 FTA

- 인삼근 : 칠레(6→0), 인도(30→25.5),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말레이시아, 페루 무관세
- 절편, 인삼분 : 캄보디아(35→15), 인도네시아(5→0), 베트남(10→5), 브루나이, 싱가포르 무관세

■ 수출확대 방안

- 현지 인지도가 높은 국제식품박람회 활용한 인삼가공품 홍보
- 현지 축제 홍보로 히스패닉 시장 공략
- 상품화사업을 통한 현지 유망상품(인삼음료) 개발·육성 지원

10 막걸리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2,905	4,422	6,277	19,415	19,095	43,082	52,735	121.9	176.2
일 본	2,632	4,026	5,400	15,556	15,585	38,659	48,419	148.5	210.7
미 국	183	197	463	2,004	1,757	2,088	1,883	4.2	7.2
중 국	14	25	139	1,021	912	1,306	1,272	27.9	39.5
호 주	20	19	37	161	135	294	333	82.1	146.1
베트남	14	35	109	247	275	241	245	△2.2	△10.9

• 수출동향

- 막걸리 수출은 '09년 국내 막걸리 붐을 기점으로 매년 큰 폭의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91.8%) 일본에 수출
- 일본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개발 및 진출업체 증가에 따른 유통망 및 프로모션 확대로 대일본 수출 급상승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일본시장 현황

- 대형 주류업체 진출에 따른 마케팅 및 유통망 확대와 캔막걸리 수출로 성장세이나 지난해까지 이어지던 막걸리 붐이 주춤하고 일본 막걸리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증가세 둔화 전망

• 미국시장 현황

- '10년 이후 교민시장을 중심으로 막걸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운송 및 보관 문제로 대부분 살균막걸리 수출

• 중국시장 현황

- 중국은 막걸리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아직까지 백주 등 고도주 위주로 소비되고 있음



- 생막걸리 별도 위생기준이 없어 수출이 어렵지만 젊은 층 중심으로 저도주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 높음

■ FTA 현황

• 한싱가포르, 한EU FTA 체결

- 싱가포르는 FTA 이전부터 무관세 품목으로 내국 소비세만 부과. EU(8개국 수출)는 국가별로 맥주, 사케 혹은 기타주류 코드로 5.76~19.2유로/100 l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FTA 이후 즉시 철폐
- '11년 기준 수출 비중은 싱가포르(63.9천불, 0.1%)와 EU(8개국/112천불, 0.2%) 모두 매우 적음

• 한미 FTA 체결

- '11년 미국 수출은 1,883천불로 전체 막걸리 수출의 약 3.6%
- FTA발효로 관세(3센트/l)가 즉시 철폐되었으나 가격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 수출확대 방안

- 교민 및 아시아 시장 위주의 소비에서 현지시장으로의 진입확대를 위한 체험 마케팅 및 대형유통업체 관촉행사 개최
 - 한식당과 연계한 홍보행사로 현지시장 막걸리 인지도 제고
 - 어울리는 한식 메뉴 소개 등 한식세계화에 부응하여 막걸리 소비 촉진 도모
- 원산지 증명 관련 국내 수출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 FTA 발효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으로 현지 시장 진입 확대



11 유자차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25,275	27,148	26,842	12,315	32,606	13,025	40,251	6.18	24.0
중국	5,626	9,770	9,498	5,817	13,904	5,815	16,565	0.88	20.5
일본	9,982	7,437	8,082	2,827	9,336	3,397	12,425	20.2	33.0
홍콩	3,610	4,033	3,536	1,232	3,217	1,733	4,931	40.7	53.3
대만	3,794	3,395	2,973	1,315	3,194	1,049	2,897	△20.2	△9.3

• 수출동향

- 유자 생산량 정체('11년 약 13만톤)로 수출금액 · 물량의 동시 확대는 어려운 가운데 단가 상승에 의해 수출액은 지속 증가 추세
- 한국 유자차의 부가가치 제고 노력에 따라, 바이어 ·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완화된면서 수출 확대 추세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중국시장 현황

- 중국 서부지역 수요확대 및 중화권 시장의 유자차 응용방법 다양화(식재료, 음료) 등으로 수요 지속 확대
- 현재 유통업체를 통한 중국 서부지역 개척 및 고급수입품으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수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증가추세

• 일본시장 현황

- OEM제품, 소스류 등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여 전체 수출금액을 견인

• 홍콩, 대만 시장 현황

- 수출단가 개선으로 인해 수출금액이 소폭 상승 했으나 답보 상태



■ FTA 현황

• 한싱가포르, 한EU FTA 체결

- 싱가포르는 기존관세 0%로 무관세 품목, EU는 기존 20.8%에서 2011.7.1부터 0%로 관세 철폐
- '11년도 싱가포르 수출은 10만달러 규모로 약 0.3%, EU 수출국(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수출합계 9만달러로 0.2%

• 한미 FTA 체결

- 기존관세 14%에서 FTA체결로 2012년부터 2%씩 관세가 하락하여 2018년부터 완전 철폐

■ 수출확대 방안

• 현지 수입업체 대상 관세하락 품목에 대한 관세효과 설명세미나

- 현재 FTA대상국으로의 수출은 단일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과의 혼합 수출이 대부분으로, 다품목 취급 수입업체 대상 관세효과 설명이 필요
- 해외 aT를 통한 한국식품 수입 바이어 대상 관세효과에 대한 세미나 및 주요 품목 홍보를 통해 취급 매력도 제고



12 소스류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07,172	121,717	109,496	55,011	129,705	57,640	155,383	4.8	19.8
러시아	38,834	51,273	35,754	20,871	36,399	17,464	36,187	-16.3	-0.6
중 국	18,552	19,375	18,343	5,092	25,894	6,505	32,183	27.8	24.3
미 국	21,403	21,805	22,377	12,637	24,988	14,408	30,369	14.0	21.5
일 본	7,990	7,802	10,517	5,074	14,199	5,625	17,475	10.9	23.1

• 수출동향

-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류의 영향과 한식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고추장, 기타소스(BBQ소스) 등은 꾸준한 증가세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러시아시장 현황

- 러시아의 마요네즈 시장이 지속 성장해 오면서 포화상태에 다다른 점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웰빙트렌드에 따라 변모하는 건강지향적 소비성향으로 수출 성장 둔화 예상

• 중국시장 현황

- 중국내 현지인들의 한국식 비빔밥, 떡볶이 등 한식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 수가 증가추세로 식재료용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고추장의 소비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 증가 기대

• 미국시장 현황

- 미국의 소스시장은 안정된 성장세로 전체 식료품시장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임

■ FTA 현황

• 한미 FTA 체결

- 간장, 된장, 고추장, 기타소스(BBQ소스)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
- 교포시장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은 된장, 고추장임

* 관세율 : (기존) 간장 (3%), 된장·고추장·기타소스 (6.4%) → (발효 후) 0%

■ 수출확대 방안

- 현지인 식재료로 활용 가능한 제품 개발로 현지인 마켓 진입
- 현지 한식당 공동구매, 기내식 납품, US Food Service 등 식재료 유통업체 공급 추진

13 면류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79,365	200,280	207,303	73,598	240,149	85,052	290,255	15.6	20.9
일 본	21,754	24,598	34,351	11,742	45,860	14,038	62,263	19.6	35.8
미 국	45,490	48,309	43,818	18,313	46,095	19,477	50,660	6.4	10
중 국	30,114	35,980	39,562	4,220	39,699	5,299	41,703	25.6	5.1
호 주	10,066	12,311	11,749	5,136	15,455	4,853	15,915	-5.5	3

• 수출동향

- 면류 수출은 지난 5개년간 연평균 15%의 높은 성장세
-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국수(우동), 기타파스타(만두)가 전체 수출의 87% 이상을 차지하며 '11년 일본 지진여파로 라면수출 증가하고 해외시장에서 일본산 대체품으로 한국산 수요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20.9% 증가한 290.3백만불 수출
- 일본, 미국, 중국이 주요 수출국 비중이 전체 53%를 점유하며 한류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최근 동아시아, 중동, 남미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 추세

* 10만불 이상 수출국 수 : '07(47개) → '11(65개)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일본시장 현황

- 한국산 면류 중 주 수입 품목은 라면, 냉면, 소면이나 현지에서 상품 경쟁력을 보이는 것은 라면과 냉면 제품
- 라면은 국내 주요 라면사의 현지 마케팅 강화 및 삼양식품의 PB상품 수출, 일본 지진으로 인한 대체수요로 '11년 수출 전년대비 35%급증
- 최근 대지진으로 인한 대체재 효과 감소와 자국식품 구매 움직임 등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라면업계의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와 병행하는 마케팅 공세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 미국시장 현황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외식횟수가 줄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선호도 증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라면은 일종의 수프개념으로 간편하게 조리 가능한 컵라면을 주로 소비
- 주요 수출품은 라면, 국수, 냉면으로 최근 라면 중심으로 교민마켓 위주의 시장에서 동양계, 히스패닉 시장으로 확대 추세이며 '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식재료 대체재로 우동면(국수) 등이 수출 증가세

• 중국시장 현황

- 일인당 라면 소비량 1위국인 한국(80개)와 비교할 때 중국은 연간 34개 세계 4위로 발전가능성을 보여줌.

* 1인당 소비량 : 2위 인도네시아(52개), 3위 일본(50개)

- 한국라면의 2대 수출국이나 농심(라면) 현지공장을 운영 중이며, 씨제이제일제당(만두)도 '12년 중으로 현지공장 설립을 추진 중임
- 그러나 젊은 층 중심으로 한류, 한국의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안전성, 영양을 중심으로 한 고급화 마케팅 강화 필요

* 풀무원의 중국 냉장면 시장진출 성공사례 : '09 290만\$ → '10 1500만\$ (517%↑)

■ FTA 현황

• 한아세안 FTA 체결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 면류는 FTA 체결 전에도 아세안 지역 수출 비관세 품목으로 FTA와 상관없이 최근 한류 영향으로 수출 상승 기대

• 한EU FTA 체결

- 면류 수출은 관세 즉시철폐로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나 주요 소비층이 아시아인 계통임

* 라면 6.4 +24.6€/100kg/net / 기타파스타 6.4+9.7€/100kg/net

- 그러나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07년부터 5년간 2배의 수출신장세를 보이는 등 EU 시장의 면류 수출은 상승세에 있어 FTA 체결로 현지 바이어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기대

※ 라면, 국수, 비스킷에 대해서는 원산지기준 면제물량을 확보하여 수출용이

• 한미 FTA 체결

- 면류 품목은 6.4% 관세가 FTA 체결로 즉시 철폐됨

- 전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우동면(국수) 중심으로 대체효과 기대

- 라면 품목의 경우 히스패닉을 타겟으로 추진 중인 업계들의 현지 주류시장 공략 필요

■ 수출확대 방안

• EU, 미국 등 즉각적인 관세철폐 지역을 대상으로 판촉 등 마케팅을 강화하여 수출확대 견인

- 미국 지역의 경우 주류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유통시스템 핵심인 벤더활용 마케팅 강화

- EU 시장의 경우 Kpop등 한류를 활용하여 영국, 프랑스 등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타겟으로 홍보를 통한 수요창출 및 대형유통체인망 입점이 가능한 바이어 발굴



14 밤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07	'08	'09		'10		'11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28,194	26,533	12,889	29,858	13,185	30,157	10,709	28,956
중 국	16,659	15,050	9,945	15,604	10,201	16,643	8,624	16,479
일 본	9,696	9,720	1,440	10,299	1,280	9,006	1,152	9,338
미 국	1,739	1,429	1,333	3,403	1,365	3,408	733	2,301
프랑스	-	80	80	185	60	129	40	92
대 만	84	182	45	189	107	477	60	330
기 타	16	72	46	178	172	494	100	416

• 수출동향

- '00년 이후 밤 수출은 원료수출형태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09~'10년 소폭 회복세를 보이다 작황부진으로 '11년 재 하락세
- 주 수출국이 '03년 이후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된 사유는 국내 간밤 업체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이전으로 인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중국에서 가공하여 일본으로 우회수출
- 미국 시장은 '10년 3백만불까지 수출이 확대되었으며('11년은 소폭 하락), 지속적인 현지 유통업체 관측행사 효과로 주류마켓 시장 확대 및 수출증가
- '11년은 일본의 재고소진, 미주 등으로의 수출선 다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밤 생산량 감소 및 품질저하로 인한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수출물량 및 금액은 전년대비 감소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미국시장 현황

- 국가별 점유율은 5년 평균기준으로 이탈리아 47%, 중국 26%, 한국 22%임



- 이탈리아 산의 경우 미국 내에서는 수입 밤 등급 중 가장 좋은 등급으로 매겨짐
- 한국산은 밤의 크기가 이탈리아, 중국산보다는 작으나 당도는 가장 높음. 다만 사이즈가 작고 껍질질이 단단하여 속껍질을 벗기기 힘든 것이 단점
- 한국산의 미국 내 유통은 한인 및 중국계 마켓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EU시장 현황

- 유럽의 주요 밤 생산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밤을 수입하며 이중 이탈리아산 밤 수입량이 월등히 많음

건조 및 신선 밤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톤)

구분		2009년			2010년		
순위	수출국	금액	중량	차지비율(%)	금액	중량	차지비율(%)
1	이탈리아	5,283	2,098	41.99	8,153	3,517	52.16
2	스페인	3,495	2,768	27.78	4,010	2,266	25.65
3	포르투갈	2,625	1,358	20.87	2,161	1,204	13.83
4	보스니아&세고비아	239	265	1.90	339	393	2.17
5	네덜란드	314	219	2.49	316	183	2.02
6	중국	42	30	0.34	236	276	1.51
7	대한민국	188	80	1.49	138	60	0.89
TOTAL		12,581	7,008		15,634	7,978	

자료: GTIS / HS code: 0802 40000 (건조 및 신선 밤), EU CN code: 0802 40

- EU지역 타국산 밤과 비교했을 때 한국산 밤은 당도가 높아 단맛이 강하고 크기가 큰 편이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이 단점
- EU지역에서 중국 및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산에 밀려 한국산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가공용으로 이용됨

■ FTA 현황

• 한-미 FTA 체결

- 밤은 현재 관세가 없음



- 마롱그라세(8%)의 경우 5년후 관세 철폐

품목 (HS Code)	미국 관세율(%)	미국측 협상결과	우리나라 관세율 (%)	우리측 협상결과
밤				
(0802.40.10/탈각)	0	즉시 관세철폐	219.4	15년 내 관세철폐
(0802.40.20/미탈각)	0	즉시 관세철폐	219.4	
(0811.90.10/냉동)	3.4	즉시 관세철폐	30	
(2006.00.70/마롱그라세)	8	5년 철폐	30	
(2008.19.10/조제저장)	0	즉시 관세철폐	30	

- 우리측은 미국의 단기임산물에 대한 계절관세는 미적용

- 발효 후 양국간 위생검역(SPS) 위원회 설치,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

• 한-EU FTA 체결

품목	한국 HS Code	EU CN Code	종전 EU관세율(%)	EU양허
밤(비탈각/신선,건조)	0802401000	08024000	5.6	0
밤(냉동)	0811901000	08119095	14.4	0
밤(조제)	2008191000	20081919	11.2	0
		20081999	11.8	0

- '11년 기준 대 EU 밤 수출실적은 99천 달러이며, 관세는 발효 즉시 모두 철폐됨

- 대 EU 수출임산물 10만달러 이상 실적 품목은 총 임산물의 85%를 차지하며, 관세혜택은 약 13만 달러, 10만달러 이상 품목의 2.9% 상당임

- 그 외 표고버섯, 건조감, 밤 조제품도 즉시 관세가 철폐됨

■ 수출확대 방안

• 미국

- 상대적으로 기반이 안정적인 한인 및 중국마켓을 대상으로 수출 물량을 꾸준히 증가시키며, 밤 소비가 많은 유럽계 거주 분포가 많은 지역의 마켓으로 홍보 · 판촉 확대

- 워싱턴식품박람회(Fancy Food Show) 임산물 홍보관 운영으로, 밤 수출용 레시피 시연 및 동영상 활용을 통한 홍보 실시 및 생밤 및 밤 가공품 전시를 통한 시장테스트 및 바이어상담

- 미국 주류마켓 신선품 홍보 판촉 마케팅 실시

* 수출협의회 주도로 BJ's, Costco, Trader Joe's 등 주류마켓 입점 추진

• EU

- 밤 해외시장조사단 활동으로 신규시장 바이어 발굴 (오스트리아 · 스위스)

- 신선품 및 밤 가공품 전시 · 상담, 밤 요리 시연행사 등

• 한국임산수출사업단(마케팅보드) 주관 신규시장 수출 공동마케팅

- 프랑스 독일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

- EU 시장조사단 및 파리식품박람회 참가 활동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수출확대 추진

15 김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59,728	75,313	81,507	9,560	105,197	11,964	161,494	25.1	53.5
일 본	15,462	17,685	25,028	1,357	35,472	2,075	58,047	52.9	63.6
미 국	18,088	20,549	19,336	3,678	23,466	4,457	38,669	21.2	64.8
중 국	4,459	6,377	7,564	590	9,957	917	20,050	55.5	101.4
태 국	5,720	11,215	9,980	958	13,910	996	15,373	4.0	10.5

• 수출동향

- 주력시장인 일본, 미국, 중국으로의 조미김 수출호조와 대 태국 마른김 수출증가로 연평균 20% 이상 수출 증가세 유지

-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안전성 우려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건강스낵용 조미김 및 식재료용 마른김 소비확대 등으로 수출 지속 증가 전망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미국시장 현황

- 김은 주로 한인 교포시장과 아시안 마켓에서 소비되며, 스시문화 보편화 및 건강식품 인식확산으로 미국 현지인 소비 증가 추세임
- 대형유통업체인 Costco와 건강식품 전문매장인 Whole Foods Market 등에 입점 · 판매 확대되며 수출 호조세 전망

* 대미 수출실적 : ('01) 9백만불 → ('04) 13 → ('07) 18 → ('10) 23 → ('11) 39

• 유럽시장 현황

- 유럽시장에서 김은 생소한 품목이나, 스시문화 및 유통업체 입점 확대로 소비 기반 확대 추세

* 대EU 수출실적 : ('01) 0.9백만불 → ('04) 1.1 → ('07) 1.7 → ('10) 2.7 → ('11) 3.0

■ FTA 현황

• 한미 FTA 체결

품목 (HS Code)	미국		대한민국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마른김 (1212-20)	—	—	20	3년 균등철폐
조미김 (2008-99)	6.0	즉시 철폐	45	10년 균등철폐

- FTA발효에 따른 조미김 관세철폐로 향후 수출확대 전망

• 한-EU FTA 체결

품목 (HS Code)	EU 관세율(%)	EU측 협상결과	우리나라 관세율 (%)	우리측 협상결과
김 2106-90-40	0	—	8	즉시철폐

- FTA 발효 이전부터 무관세임

■ 수출확대 방안

- 저열량, 웰빙식품으로 김 홍보를 위하여 유통업체 관촉행사 확대
- 식재료로서의 김 소비확대를 위하여 국제박람회 등에서 CIA개발 김요리 시식홍보행사 실시
- 다양한 소비용도의 현지화된 김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 지원

16 굴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량	금액
계	40,145	46,260	42,247	9,544	66,057	10,909	81,683	14	24
일 본	14,144	17,441	15,764	4,182	26,782	5,128	38,016	23	42
미 국	15,133	16,789	15,526	3,277	17,432	3,645	21,446	11	23
홍 콩	2,726	3,842	3,338	406	8,829	268	6,183	△34	△30
기 타	8,142	8,188	7,619	1,678	13,013	1,868	16,038	11	23

• 수출동향

- 생산량 및 해외 수요 증가로 5년간 연평균 21.8%의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굴은 냉장·냉동굴, 가공굴 형태로 일본·미국에 수출
- 주 수출국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가 총 수출액의 86%를 차지하며, '11년도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23.7% 증가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일본시장 현황

- 일본에서 대지진의 영향 및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한국산 굴 수요가 큰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이 주된 수입국(93%)

* '11년 굴 수입규모는 약 39백만불로 수요증가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9.8% 증가

- 다만, 한국산 냉장굴이 안전성 문제로 수출이 중단되어 냉동굴 위주로 수출됨에 따라 일본인들의 수요 충족에 한계

* 일본 가공수출업체들이 경기 불황을 고려하여 감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의 굴양식시설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중

• 미국시장 현황

- 미국 소비자들은 굴을 주로 Seafood 전문식당 등을 통한 고급 appetizer용의 신선굴의 소비 선호도가 높고, 일반마켓에서는 신선굴 보다는 여러 형태의 캔



제품이 판매됨

- 현재 미 FDA에서 한국가공업계에 자발적 리콜 권고 상태로 패류 생산해역 오염 개선 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수출 재개 추진

※ 미 FDA 노로바이러스 검출 등 지정해역 오염으로 한국산 패류 수입산 중단조치('12.5)

■ FTA 현황

• 한-EU FTA 체결

품목 (HS Code)	EU			대한민국	
	관세(%)	협상결과	1차연도 적용관세율	관세율(%)	협상결과
냉동굴(0307102000)	9	3년내 철폐	6.7	-	-
신선굴(0307101090)	9	3년내 철폐	6.7	-	-
굴(밀폐용기) (1605901010)	20	3년내 철폐	15	-	-

-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복(밀폐용기)는 EU 수산물 수입관세가 5년 이내로 철폐

• 한-미 FTA 체결

품목 (HS Code)	미국		대한민국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굴(밀폐용기)(1605-90)	4.7	10년균등철폐	20	즉시철폐

- (한국→미국) 미국 수산물 수입관세는 4.7%로 낮은편임
- (미국→한국) 굴 수입관세의 즉시철폐
-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수출증가 전망

굴(밀폐용기) 수출 증가 전망

(단위: 천달러)

구 분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굴(밀폐용기)	252	658	823	8,663	578

※ 1. 자료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11.8.5/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작성)

2. 수출증가가 이행기간 완료 이후 15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 한-싱가포르 FTA 체결

품목 (HS Code)	싱가포르		대한민국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건조굴(03071030)	-	-	-	-

- 기존 무관세 품목으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 특혜는 없음

■ 수출확대 방안

- 수출상품화사업을 통해 FTA 체결 국가의 시장개척 진출여건 분석
 - 굴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수출 저변확대
- 갯벌참굴이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가공단계 위생관리 필요
 - * 지정해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36개월 소요되며, 현재 7개 해역 지정
- 판촉행사,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수출 상담회 및 시식홍보행사 등
 - 굴을 활용한 요리법 개발 및 외식산업의 메뉴개발 등

17 전복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5,040	20,997	33,751	1,026	36,820	1,259	52,351	23	42
일본	14,973	20,973	33,591	1,001	35,880	1,232	51,091	23	42
홍콩	14	4	51	23	844	22	1,041	△4	23
기타	53	20	109	2	96	5	219	150	128

• 수출동향

- 전복 수출은 5년간 연평균 36.6%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
- 주 수출국은 일본, 홍콩 등이며 '11년 일본 지진에 따른 미야기·이와테현 등



의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42.2% 증가한 52.4백만불 수출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일본시장 현황

- 대지진 피해 복구가 지연되어 생산량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가공전복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 활전복 수요 증가
- 한국산과 일본산 전복이 유사하여 일본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한국산 활전복의 경쟁력이 높음

• 홍콩시장 현황

- 홍콩에서 전복은 해삼, 제비집, 상어지느러미와 함께 고가의 전통 건강식품으로 소비되며, 주로 냉동, 건조, 통조림 형태로 수입되어 식재료 및 가정용으로 이용되며 맛·향 보다 '씹힘'을 중시
- 전복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 우회 수출하는 통로이자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수입 증가 전망('11년 수입규모 약 2.9억불)

■ FTA 현황

• 한-EU FTA 체결

품목 (HS Code)	EU			대한민국	
	관세율(%)	협상결과	1차연도 적용관세율	관세율(%)	협상결과
전복(밀폐용기)(1605901091)	26	5년 철폐	19.5	-	-
활전복(0307911200)	11	3년 철폐	8.2	-	-

-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복(밀폐용기)는 EU 수산물 수입관세가 5년 이내로 철폐

• 한-미 FTA 체결

품목 (HS Code)	미국		대한민국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활전복(0307990020)	-	-	-	-
전복(밀폐용기)(0307990020)	-	-	-	-

- 기존 무관세 품목으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 특혜는 없음

• 한-싱가포르 FTA 체결

품목 (HS Code)	싱가포르		대한민국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활전복(030791 10)	-	-	-	-
신선, 냉장전복(030791 20)	-	-	-	-
조제 및 저장처리 전복(160590 10)	-	-	-	-
건조,염장, 염수장 전복(030799 90)	-	-	-	-
냉동 전복(030799 10)	-	-	-	-

- 기존 무관세 품목으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 특혜는 없음

■ 수출확대 방안

- 수출상품화사업을 통해 FTA 체결 국가의 시장개척 진출여건 분석
 - 활전복 및 건조, 저장 식품을 개발하여 전복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수출저변 확대
 - 활전복이 장시간, 장거리 운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밀봉이 가능하고 보관의 편의성을 제고한 포장기술 개발
- 판촉행사,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수출 상담회 및 시식홍보행사 등
 - 전복을 활용한 요리법 개발 및 외식산업의 메뉴 개발 등



18 넙치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44,154	43,369	51,812	5,623	70,657	4,464	54,010	△20.61	△23.56
일 본	41,419	40,875	45,341	4,126	54,235	3,176	40,217	△23.01	△25.85
중 국	97	437	758	1,131	9,681	842	6,883	△25.57	△28.9
미 국	2,251	1,996	5,098	284	6,004	257	5,268	△9.52	△12.25
기 타	387	61	615	82	737	189	1,642	130.7	122.7

* 기타국('11년 기준) : 베트남 640천불, 태국 442, 대만 175, 싱가포르 105, 말레이시아 84, 캐나다 76 등

• 수출동향

- '07년에는 일본(93.8%, 금액기준)으로 대부분 수출되었으나, 지난 5년간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수출국이 점차 다변화되었음

* 주 수출국(금액기준) : ('07년) 일본(93.8%), 미국(5.1) → ('11) 일본(74.4%), 중국(12.7%), 미국(9.8%)

- 넙치 수출은 80% 이상이 활어이며, 일본과 미국으로는 주로 활넙치가, 중국으로는 냉동넙치가 수출됨

* 품목별('11) : 활어 44,549천불(82.5%), 냉동 8,386(15.5), 신선냉장 1,074(2.0) / 필렛, 기타 없음

- 일본(활어 98.9%), 미국(활어 81.4%), 중국(냉동 99.7%)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일본시장 현황

- 일본에서 넙치는 사시미(생선회) 상품으로 수요가 큰 품목이며, 넙치류의 활어로는 대부분 한국산이 수입되고 있음

- 일본 대지진 이후 내수 소비침체로 고가생선에 속하는 넙치의 수요가 급감한 상황임

• 미국시장 현황

- 미국 소비자들은 넙치를 주로 스테이크, 튀김, 피레트 형태로 소비하며 일반마켓에서는 주로 냉동진공포장, 신선 피레트 형태의 제품이 판매됨

- 교포들이 선호하는 횡감용 활넙치가 주로 수입되어 횡감용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FTA 현황

• 한EU FTA 체결

품목 (HS Code)	EU		대한민국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넙치(활어) (0301-99)	16	5년 균등철폐	10	10년 균등철폐
넙치(냉동) (0303-31)			10	10년 균등철폐
Lesser or Greenland halibut (0303 31 10)	7.5	즉시철폐		
Atlantic halibut (0303 31 30)	7.5	즉시철폐		
Pacific halibut (0303 31 90)	15	5년 균등철폐		

- 활넙치는 한국이 대EU 활수산물 수출가능 국가목록에 속해있지 않아 현재 수출이 불가능
- 냉동넙치에 대한 관세율은 각 종류마다 다르나, Pacific halibut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무관세율이 적용됨

* Pacific halibut 관세율: 12.5%(2011.7.1~2012.6.30) / 10%(2012.7.1~2013.6.30) / 7.5%(2013.7.1~2014.6.30) / 5%(2014.7.1~2015.6.30) / 2.5%(2015.7.1~2016.6.30) / 0%(2016.7.1~)

• 한미 FTA 체결

품목 (HS Code)	미국		대한민국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넙치(활어) (0301-99)	-	-	10	3년 균등철폐

- 기존 무관세 품목으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 특혜는 없음

• 한-싱가포르 FTA 체결

품목 (HS Code)	싱가포르		대한민국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넙치(활어) (0301-99)	-	-	-	-

- 기존 무관세 품목으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 특혜는 없음



■ 수출확대 방안

- 수출상품화사업을 통해 FTA 체결 국가의 시장개척 진출여건 분석
- 관측행사,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수출 상담회 및 시식홍보행사 등

19 참치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293,458	293,189	314,373	176,439	374,354	144,253	393,661	-18.24	5.16
일 본	143,677	118,629	137,672	25,164	165,514	22,986	177,478	-8.66	7.23
태 국	69,464	93,892	102,042	88,229	93,930	89,762	135,109	1.74	43.84
스 페 인	25,215	8,591	15,379	11,459	26,527	7,724	19,657	-32.59	-25.9
에콰도르	965	3634	9,952	16,810	21,808	4,660	6,184	-72.28	-71.68

- 수출동향

- 참치 어획량 감소로 수출물량은 감소 추세이나 물량부족에 의한 단가상승, 엔고 영향으로 수출금액은 꾸준한 증가세

※ 수출물량 감소 ('09 : 178,304톤 ➡ '11 : 144,253톤)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미국시장 현황

-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중장년층이 주 소비계층을 이루며 동북부 대서양 지역, 서부 태평양지역의 대도시 거주자가 주로 소비하고 있음

※ '11년 참치 미국 수출 실적 : 물량(597천톤, 3,824천불)

- 일본시장 현황

- 경기침체 및 젊은 층의 패스트푸드 선호 등 식문화 변화로 지속적으로 참치회감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엔화 강세 및 단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금액 다소 증가(↑7.23%) 황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 유럽시장 현황

- 황새치 주수출국인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로 소비시장 침체되어 수출 감소(스페인 ↓ 25.9%, 이탈리아 ↓ 59.76%)

• 동남아시아 시장 현황

- 태국, 베트남 등 가공용 참치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수출량 증가(태국 ↑ 43.84%, 베트남 ↑ 532%)

■ FTA 현황

• 한EU FTA 체결

품목 (HS Code)	EU 관세율(%)	EU측 협상결과	우리나라 관세율(%)	우리측 협상결과
냉동황다랑어 0303-42-00	20~22	즉시, 3년철폐	10	3년철폐
기타어류냉동피레트(황다랑어) 0304-29-90	18	3년철폐	10	5년철폐
냉동황새치 0303-61-00	7.5	3년철폐	10	3년철폐

- 주수출품인 황다랑어('10년 38.0백만불)는 관세철폐(인하)

• 한미 FTA 체결

품목 (HS Code)	미국		대한민국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다랑어(기름담근것) (1604-14)	35	10년 비선형 철폐	20	10년 균등철폐

- 미국 주수출품목인 마른김, 오징어(냉동), 넙치(활어), 미역 등은 기존 무관세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 특혜가 없음

- 수출증가 가능성 있는 품목은 다랑어(기름담근것),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등임

■ 수출확대 방안

• 다랑어(기름담근것)는 관촉행사,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수출 상담회 및 시식홍보행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수출증가 기대

20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 수출실적 및 수출동향

•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07 금액	2008 금액	2009 금액	2010		2011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쇠고기	208	749	7,969	1,630	7,649	2,094	13,636	28.4	78.3
중국	11	25	4,418	743	3,758	995	6,165	33.8	64.0
홍콩	0	1	628	63	306	872	5,719	1,277.7	1,770.2
베트남	11	167	1,735	491	2,062	70	390	△85.9	△81.1
미국	3	0	1,054	268	997	57	377	△78.5	△62.2
돼지고기	25,619	17,716	11,625	482	780	547	1,560	13.3	100.1
중국	754	1,279	884	24	277	39	484	62.6	75.1
일본	213	141	453	1	5	53	334	6,954.6	6,499.3
태국	1,595	1,792	3,164	342	254	351	242	2.5	△5.0
홍콩	209	62	57	18	76	53	200	194.0	161.6
가금육	8,985	12,884	18,380	22,202	31,827	25,695	40,869	15.7	28.4
베트남	4,164	7,633	11,005	17,761	19,647	18,536	21,629	4.4	10.1
일본	3,023	3,162	4,297	1,388	7,294	2,272	12,237	63.7	67.8
홍콩	549	582	1,059	2,501	2,794	3,745	4,022	49.7	44.0
대만	967	1,193	1,471	394	1,373	415	1,665	5.4	21.2

• 수출동향

- 구제역으로 인한 신선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열처리 가공육 및 멸균 제품 등 대체 품목의 수출로 `10년 대비 수출 금액 증가

* 쇠고기 : (`10) 7,649천불 → (`11) 13,636천불, 돼지고기 : (`10) 780천불 → (`11) 1,560천불

- 베트남 신선 닭고기 수출 증가와 일본 삼계탕 수요 증가로 가금육 수출 전년대비 28.4% 증가

■ 주요 수출국 시장현황

• 일본시장 현황



- 닭고기 연간 소비량은 207만톤(수입 81만톤, 39%)으로, 주 수입국은 브라질(86.7%), 미국(9.8%)이며 현재 검역상의 문제로 한국 닭고기 수출 불가
- 삼계탕 수출의 대부분(83%)이 일본으로 수출되며 최근 한류열풍으로 재일교포 뿐 아니라 현지인의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

• 베트남시장 현황

- 절친 맛을 선호하여 산란노계, 토종닭 등에 대한 수요가 크고 상시 AI 발생국으로 상대적으로 위생적인 한국산 제품 선호
-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과 외국인 유입의 증가로 소비 패턴 고급화

■ FTA 현황

• 한-ASEAN FTA 체결 (베트남)

- (수출) 베트남 수출 관세는 '12년 기준 10%이며 '18년 전체 품목 관세 철폐
* ('13) 7% → ('14) 7% → ('18) 철폐
- (수입) 한국 수입관세는 가금육 일부 품목(550g이하인 것)에 한해 18-20%이고 그 외 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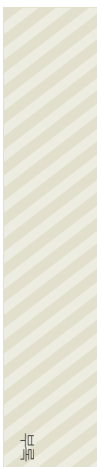
• 한미 FTA 체결

- (수출) 가금육의 미국 관세는 8.8센트/kg(절단하지 아니한 육, 즉시 철폐), 17.6센트/kg(절단육, 균등 철폐) 등으로 최대 이행 10년 내에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나 검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수입) 쇠고기(15년), 돼지고기·닭고기(10년) 등 낮은 관세인하폭으로 균등 철폐

■ 수출확대 방안

- 상품화 사업을 통한 베트남 고가 시장 진입으로 수출 확대 추진
- 태국 등 중화권 시장 개척을 통한 열처리 가금육 품목 수출 확대
 - 수출 홍보 사업 및 신규 박람회 참여를 통한 바이어 확보
- 구역적으로 수출 불가능한 신선 육류 수출 대체로 열처리 가공품 수출 확대 추진
 - 국내 열처리 돈육 가공공장 일본 승인 지원

* '12년 현재 4개 업체 승인 추진 (농협목우촌, 장충동왕족발, 이유평드, 다인제주)



FTA활용

농수산물식품 수출핸드북

발행일 : 2012년 6월

발행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인 쇄 : (주)범신사 02-720-9786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법인 “형도”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